

#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해외사례 연구

2020. 10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다 운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형 민 특수전문직3급(공인회계사)

이 성 현 특수전문직4급(세무사)

# 목 차

I. 서론 .....	7
II.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제도 .....	10
1.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10
가. 부가가치세 .....	10
나. 관세 .....	14
2. 수입물품 통관절차 .....	17
가. 개요 .....	17
나. 수입물품 통관절차 .....	19
3. 전자상거래 현황 등 .....	29
가.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	29
나.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	32
다. 관부가세 납부방법 .....	34
III.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주요 도입국의 과세제도 .....	37
1. OECD .....	37
가. 개요 .....	37
나.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징수 모델 .....	40
다.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	43
라. OECD 회원국의 소액 수입물품 면세점 현황 .....	52

2. EU .....	54
가. 개요 .....	54
나.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59
다. 간이사업자등록제도(OSS) .....	63
라.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65
3. 호주 .....	69
가. 개요 .....	69
나. 소액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71
4. 뉴질랜드 .....	80
가. 개요 .....	80
나. 소액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82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93
1. 국제비교 .....	93
가. OECD 및 EU의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	93
나. 주요국의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95
2. 시사점 .....	98
가.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필요성 .....	98
나. 소액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징수 방안 마련 .....	100
다. 기타 고려할 사항 .....	105
참고문헌 .....	109

## 표 목차

〈표 II-1〉 우리나라의 재화 수입 시 과세표준 계산 사례 .....	12
〈표 II-2〉 우리나라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20
〈표 II-3〉 우리나라의 목록통관 및 일반수입통관 면세기준 .....	23
〈표 II-4〉 우리나라의 관세 간이세율 .....	27
〈표 II-5〉 우리나라의 우편물 간이신고 및 일반신고 비교 .....	28
〈표 II-6〉 우리나라의 수입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	30
〈표 II-7〉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물품 과세 현황 .....	30
〈표 II-8〉 우리나라의 특송물품 및 우편물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 .....	31
〈표 II-9〉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입 현황 .....	32
〈표 II-10〉 우리나라가 주로 이용하는 해외직구 유형 .....	33
〈표 II-11〉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유형별 온라인쇼핑몰 이용 현황(2018) .....	33
〈표 III-1〉 OECD 전자상거래 기본원칙 .....	39
〈표 III-2〉 OECD 회원국의 소액 수입물품 면세점 현황(2018. 1. 1.) .....	53
〈표 III-3〉 EU의 소액물품 관련 사례 .....	67
〈표 III-4〉 호주의 소액물품 관세물품가격 계산 사례 .....	73
〈표 III-5〉 호주의 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제재사항 .....	78
〈표 III-6〉 뉴질랜드의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절차 요약 .....	90
〈표 IV-1〉 OECD 및 EU의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	94
〈표 IV-2〉 주요국의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97

## 그림 목차

[그림 II-1] 우리나라의 구매대행 형태 .....	19
[그림 II-2] 특송물품 수입 개관 .....	24
[그림 II-3] 우리나라의 국제우편물 수입 개관 .....	28
[그림 II-4] 아마존의 물품 결제 시 관세보증금 납부 서비스 예시 .....	35
[그림 III-1] 글로벌 전자상거래 판매자(2017년) .....	44
[그림 III-2] 완전책임모델의 기본 운영방식 .....	47
[그림 III-3] 완전책임모델하에서의 소액 수입물품 운영방식 .....	49

## I. 서론

-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의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모바일을 비롯한 인터넷 환경의 확산과 더불어 아마존(amazon.com), 이베이(Ebay) 등 거대 글로벌 쇼핑몰 및 전문 배송업체의 등장으로, 개인이 원하는 물품을 손쉽게 직접 주문하고 구매하는 국제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신고(목록통관 제외)를 거쳐 수입되는 물품의 건수는 2011년 390만건에서 2019년 1,750만건으로, 금액은 2011년 3억 7,800만달러에서 2019년 18억 5,900만달러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sup>1)2)</sup>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물품의 세관 목록통관 비율이 대략 60%에 이르는 점,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정확한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등에서 실제 규모는 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직구를 통하여 수입되는 자가소비 목적의 15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면제하고 있는 상황<sup>3)4)</sup>이어서,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음<sup>3)4)</sup>
  - 지난 5년간의 전자상거래 물품의 모든 통관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95% 정

---

1)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고 해당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2) 세관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신고된 건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간이통관목록제출 건은 미포함된 것임(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 <https://www.bandtrass.or.kr/theme/e-commerce.do?command=THE005View&viewCode=THE00501&iframe=N>, 검색일자: 2020. 6. 3.)  
3)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하의 일부 품목은 면세한도는 200달러임  
4)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

도는 면세되고 있으며 과세통관 건수는 약 5% 내외에 불과함<sup>5)</sup>

- 실제 2019년 기준 부가가치세가 면세 및 과세되는 건수와 금액은 각각 4,100만건(223만달러) 및 200만건(91만달러)으로 추정됨<sup>6)</sup>

- 그러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세수 손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동일 또는 유사 물품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국내 사업자로서는 가격 경쟁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존재하므로 과세 형평성을 잃는 결과가 초래됨
  - 소액 수입물품의 건수 및 비중이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 손실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룸
    - 2019년 세관을 통해 면세 처리된 물품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를 가정할 경우 확보 가능한 세수는 약 2,453억원에 달함<sup>7)</sup>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국제적으로는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이미 몇몇 국가들에서는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대두됨
  - OECD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EU에서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논의가 시작됨<sup>8)9)</sup>
  - 실제로 부가가치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호주는 2018년 7월부터 뉴질랜드는 2019년 12월부터 소액 수입물품 과세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EU 회원국

5) 정재호·김한성,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 정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7.

6)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http://www-index-go-kr.nciashield.org/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http://www-index-go-kr.nciashield.org/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0. 6. 19.

7) 세수 추정치는 223만달러 × 1,100원/달러(평균환율 가정치) × 10%로 계산하였음. 다만 현행 한-미 FTA에 따른 미국발 수입물품 면세한도(200달러) 및 「관세법」상 과세 최저한 규정을 감안 시 실제 과세전환 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8) OECE,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2015 Final Report*, OECD, 2015.

9) Ecommerce Europe, *EU VAT Reform: pros and cons for online merchants*, 2017. 6.

들은 EU 역외로부터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2021년 7월부터 과세할 예정임

- 다만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논의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제약 사항들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이를 함께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 해외직구에는 판매자 및 구매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배송대행업체, 운송업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징수 방안 선택 문제에 직면함
  - 국제우편물 반입 제도를 포함한 기존 관세행정으로는 모든 물품에 대해 과세할 경우 행정비용 증가 등 비효율성이 증대됨
  - 현행의 「관세법」이나 자유무역협정 등 법률상의 제약 요소도 존재함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 제도 및 주요국의 최근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제II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봄
  - 제III장에서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OECD와 EU의 국제적 논의 및 주요 도입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과세제도를 기술함
  - 제IV장에서는 해외사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OECD 및 EU의 가이드라인과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국의 과세제도를 비교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Ⅱ.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제도

### 1.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부과되며, 이하에서 관련 법규정의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봄

#### 가.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사업자를 불문하고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sup>10)</sup>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GATT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생산 재화와 동일한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임<sup>11)</sup>
-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말하며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함<sup>12)</sup>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10) 「부가가치세법」 제4조

11) 텍스넷, 「부가가치세법 조문별 해설」, [http://www.taxnet.co.kr/sub/law/window/tax\\_jo\\_haesul.asp](http://www.taxnet.co.kr/sub/law/window/tax_jo_haesul.asp), 검색일자: 2020. 5. 29.

1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보세구역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함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함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임<sup>13)</sup>
  - 납세의무자는 재화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sup>14)</sup>
  - 다만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sup>15)</sup>
-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포함)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sup>16)</sup>
  -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sup>17)</sup>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전이라도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일정한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3) 「부가가치세법」 제3조

14) 「부가가치세법」 제50조

15) 「부가가치세법」 제52조

16)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17)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sup>18)</sup>
-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sup>19)</sup>
- 일반적인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징수하는 관세)+(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세율)=(부가가치세액)
  - 관세가 경감되어 경감분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경감 전의 관세액)+(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1-관세경감률)×(세율)=(부가가치세액)

〈표 II-1〉 우리나라의 재화 수입 시 과세표준 계산 사례

구분	가액	계산근거
① 과세(물품)가격	1,000,000원	
② 관세	80,000원	①×8%
③ 개별소비세	75,600원	(①+②)×7%
④ 교육세	22,680원	③×30%
⑤ 농어촌특별세	7,560원	③×10%
⑥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185,840원	①+②+③+④+⑤
⑦ 부가가치세액	118,584원	⑥×10%

자료: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8-0-3

- 「부가가치세법」은 소액 수입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등 다음의 열거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sup>20)21)</sup>
- 수입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포함)

18)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19)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7-51-1

20) 「부가가치세법」 제27조

21) 국세상담센터, 『2018 부가가치세 상담실무』, 2018, pp. 307~308.

- 국민후생용품
  - 도서, 신문 및 잡지
  -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기증되는 수입재화
  -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 관세가 감면·경감·면제되는 수입재화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물품 및 우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비율만큼만 면제함)
  -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비율만큼만 면제함)
  - 제조담배
  -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비율만큼만 면제함)

## 나. 관세

-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sup>22)</sup>
  -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봄
  
-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됨<sup>23)</sup>
  -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를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확정시기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함
    -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물품의 하역 등 포함): 하역을 허가받은 때
    - 보수작업: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 장치물품의 폐기: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및 설비 유지의무 등 포함):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 제외):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수출입신고 대상 우편물 등 제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상기 외): 수입된 때
  - 과세가격 결정 시 외국통화를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과세물건 확정시기(보

22)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

23) 「관세법」 제16조

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일에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함<sup>24)</sup>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임<sup>25)</sup>
  -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수입신고인은 일정한 경우 화주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 한편 구매자로부터 관세를 선납받은 구매대행업체가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구매대행업체는 2020년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화주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sup>26)</sup>
  - 구매대행업자는 화주로부터 관부가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신고 또는 목록통관을 통해 화주가 납부 의뢰한 관부가세를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sup>27)</sup>

24) 「관세법」 제18조

25) 「관세법」 제19조 제1항

26) 「관세법」 제19조 제5항 및 부칙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

27) 소통코리아, 「구매대행形 해외직구 납세의무 관련 관세법 개정」, file:///C:/Users/cta31169/Downloads/%EA%B5%AC%EB%A7%A4%EB%8C%80%ED%96%89%ED%98%95%20%ED%95%B4%EC%99%B8%EC%A7%81%EA%B5%AC%20%EB%82%A9%EC%84%B8%EC%9D%98%EB%A

-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화주로 규정하고 있어 관부가세를 편취한 것은 구매대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주에게 미납 관부가세를 징수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여 구매대행업체가 화주와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 관세의 납세신고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sup>28)</sup>
  -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함
    -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함
  - 세관장이 부과고지 하는 물품은 납세신고에서 제외함
-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관세를 납부해야 함<sup>29)</sup>
  - 납세신고 수리일이란 납세신고를 한 경우는 납세신고 수리일, 납세고지의 경우는 납세고지일,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는 수입신고일을 말함
  - 다만 납세의무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음
- 관세는 일정한 물품의 경우 현장수납이 가능함<sup>30)</sup>
  - 여행자의 휴대품,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현장수납을 할 수 있음

C%B4%20%EA%B4%80%EB%A0%A8%20%EA%B4%80%EC%84%B8%EB%B2%95%20%EA%B0%9C%EC%A0%95%20(7).pdf, 검색일자: 2020. 6. 26.

28) 「관세법」 제38조

29) 「관세법」 제9조

30) 「관세법」 제43조

-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함<sup>31)</sup>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음
  
- 세관장은 관세가 미납부된 경우 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함<sup>32)</sup>
  -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부정신고 40%)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 - 2020년 1월 1일부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함

## 2. 수입물품 통관절차

### 가. 개요

-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이 이루어짐<sup>33)</sup>
  -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며 통관은 물품의 수출입 또는 반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통관 및 관세의 과세대상은 물품임<sup>34)</sup>

31) 「관세법」 제11조

32) 「관세법」 제42조

33) 정다운·이재선·김미정,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18.

34) 「관세법」 제14조 및 「관세법」 제2조 제13호

-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액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관세법」은 대규모 기업형 통관제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sup>35)</sup>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물품 구매자를 위한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세법령 하위에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음<sup>36)</sup>
  
-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함<sup>37)</sup>
  - 일반적으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주문하고 택배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을 의미함<sup>38)</sup>
    - 전자상거래는 신속배송 및 간편한 화물추적을 위해 주로 특송화물 또는 우편(EMS)을 통해 이루어짐
  - 전자상거래는 거래주체에 따라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기업·정부 간 전자상거래(B2G), 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C2C) 등으로 분류하기도 함<sup>39)</sup>
  
- 전자상거래 물품의 구입방식은 직접구매, 배송대행, 구매대행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40)</sup>
  - 직접구매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 구입 후 중간 배송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유형임
  - 배송대행은 해외 판매자가 국내까지 직접 배송을 하지 않거나 그 비용이 상당한

35) 정재호·김한성, 2019, p. 25.

36) 강효원,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정보 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7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6, p. 62.

37)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

38) 관세청,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2019, p.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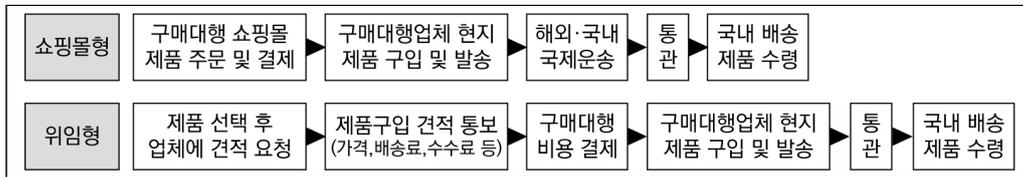
39) 김명호, 『특송물품의 최첨단 수출입 통관체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관세청, 2013, p. 8.

40) 양지선, 『해외직구 소비자 이용 및 피해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2019, p. 5.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배송대행지로 보낸 후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국내로 배송 받는 유형임

-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 직접 주문·결제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로 쇼핑몰형과 위임형으로 구분됨

[그림 II-1] 우리나라의 구매대행 형태



자료: 양지선(2019), p. 6.

## 나. 수입물품 통관절차

- 전자상거래물품은 운송방법에 따라 다음의 수입통관절차를 적용함<sup>41)</sup>
  -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하는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하는 경우: 특송통관절차
  - 우체국을 통해 반입하는 경우: 우편통관절차

### 1) 일반수입통관

- 일반 운송업체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sup>42)</sup>

41) 관세청, 2019, p. 79.

42)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다만 우리나라는 150달러 이하(미국발 여부 불문)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43)44)</sup>
-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에서 제외됨

〈표 11-2〉 우리나라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종류	품명	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 통관범위)	비고
농림 축수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각 5kg	- 면세 통관범위 초과 시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 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 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	5kg	
	잣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상항버섯	합 300g 300g	- 녹용은 검역 후 500g(면세범위 포함) 까지 과세통관 - 면세 통관범위 초과 시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
	녹용	검역 후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 면세 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 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 이 함유된 물품
	의약품	총 6병(6병 초과 시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 약)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100ml×2병 8g入×20병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 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 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 면세 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 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43) 이하 본문에서 달러는 미국달러를 의미함

44)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표 II-2〉의 계속

종류	품명	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 통관범위)	비고
생약(한약)제제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膏,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青春寶, 強力春寶 등 성분 미상 보신제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야생동물 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 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1병(1ℓ 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250g 60ml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 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li> <li>•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li> </ul>		

자료: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 2) 특송통관

- 특송물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 특송통관은 물품가격 및 특성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됨
  
- 목록통관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함<sup>45)</sup>

- 통관목록에는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운송업자명,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선하증권 번호, 수하인의 통관고유번호 등을 기재함<sup>46)</sup>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선택적 기재사항이었으나 타인 명의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6월 3일부터 필수기재 사항으로 변경됨<sup>47)</sup>
- 다음의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며 일반수입신고 대상임<sup>48)</sup>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4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 및 관세청 특수통관과,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관세청, 2020, p. 2.

46)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2항

47) 관세청,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로 바뀐다」, 보도자료, 2019. 5. 28.,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0. 6. 17.

48)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별표 1

〈표 II-3〉 우리나라의 목록통관 및 일반수입통관 면세기준

구분	목록통관	일반통관
면세기준	미국	물품 가격 200달러 이하
	미국 외	물품 가격 150달러 이하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간이수입신고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고 2천달러 이하인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임<sup>49)</sup>
  - 간이신고 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없이 인터넷·EDI 등 전자서류로 수입신고를 함<sup>50)</sup>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함<sup>51)</sup>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음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가 배제되며 일반수입신고 대상임<sup>52)</sup>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관세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 취하 또는 신고 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49)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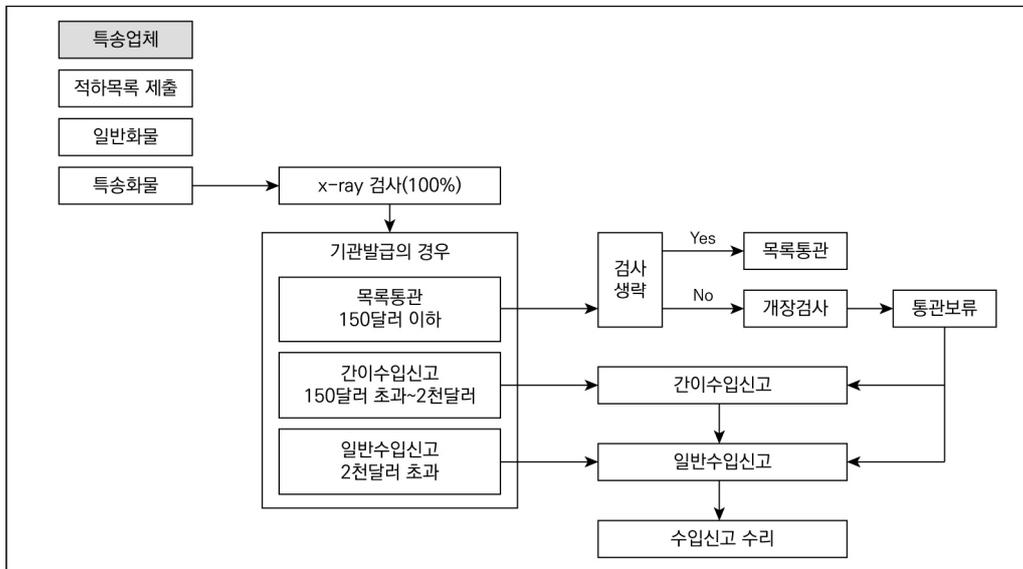
50)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51) 관세청(2019), p. 43.

5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 일반수입신고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물품가격이 2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함

[그림 11-2] 특송물품 수입 개관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자주찾는 관세행정 특송물품」,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자: 2020. 6. 3.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점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함<sup>53)</sup>
-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됨

53)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 p. 6.

-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됨
-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함<sup>54)</sup>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 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3) 우편통관

- 국제우편을 통하여 반입하는 우편물품은 현장면세와 통관대상으로 구분됨<sup>55)</sup>
  - 통관대상은 다시 현장과세, 간이통관, 일반수입통관으로 구분됨
- 현장면세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등 X-ray 검사 결과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품검사 없이 현장에서 면세 처리하는 것을 말함<sup>56)</sup>
  - 현장면세 물품은 다음과 같음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54)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55) 관세청, 2019, p. 176.

56)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 현장과세는 X-ray 검사 및 현품검사 결과 세액산출에 곤란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가격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현장에서 과세하는 것을 말함<sup>57)</sup>
  - 세관장은 검사 결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편물신고서 또는 송품장 등을 기초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세액을 입력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함<sup>58)</sup>
    - 간이통관 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 또는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
    - 도착 주소가 사서함이 아닌 우편물 등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 세액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1천달러 이하인 물품
  - 우체국장은 세관장이 통보한 세액을 수납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관세 등은 세관장 세입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함<sup>59)</sup>
- 간이통관은 일반수입을 제외한 우편물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 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sup>60)</sup>
  - 간이세율은 일정 물품에 대해 신속, 간편하게 과세하기 위한 통합세율로 우편물 품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함<sup>61)</sup>
  - 세관장은 수취인이 간이통관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송품장 등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미리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로 처리를 할 수 있음<sup>62)</sup>

57)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호

58)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59)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60)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61) 관세청 블로그, 「국제우편의 간이통관 방법을 알아보자」, 2018. 2. 14.,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_customs&logNo=22120882981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_customs&logNo=22120882981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검색일자: 2020. 6. 2.

62)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

〈표 II-4〉 우리나라의 관세 간이세율

품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55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37만 400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라. (삭제, 2017. 3. 27.)	
마. 방향용 화장품, 로열젤리	27
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2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25
다. 녹용	3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20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자료: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 일반수입통관은 물품가격이 1천달러를 초과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sup>63)</sup>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1천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상기 외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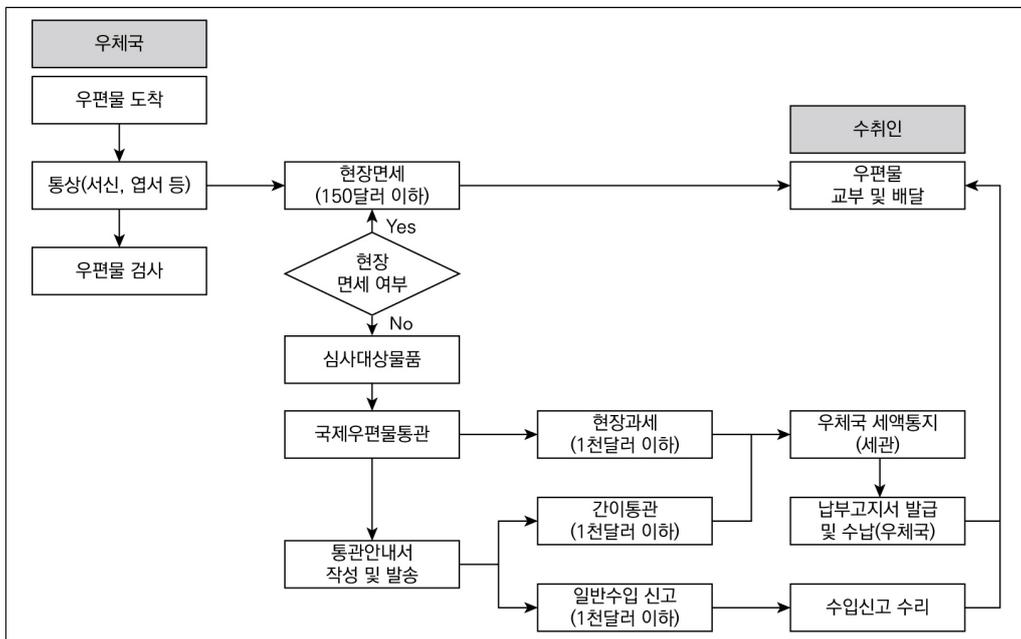
6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표 II-5〉 우리나라의 우편물 간이신고 및 일반신고 비교

구분	간이신고	일반신고
대상	- 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통관대상 우편물	-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수출입 제한, 금지 물품 포함) -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1천달러 초과 물품
신청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팩스(FAX), 방문, 우편, 이메일	- 관세사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관세신고인 부호를 부여받은 법인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 영수증, 송품장 등 가격자료	- 수입신고서 - 송품장 등 가격자료 - 가격신고서 - 요건확인서(통합공고 해당 물품)

자료: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 통관 절차」, [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03&cntntsId=2368](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03&cntntsId=2368), 검색일자: 2020. 6. 2.

[그림 II-3] 우리나라의 국제우편물 수입 개관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자주찾는 관세행정\_국제우편물」,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자: 2020. 6. 3.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3. 전자상거래 현황 등

#### 가.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서 등에 전자상거래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통해 과세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음<sup>64)</sup>
  - 일반수입통관은 「수입신고서」 17. 거래구분에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이라고 작성함
  - 특송물품은 「통관목록」 20. 거래코드에 전자상거래물품 코드(A)를 기재함
  - 우편물은 간이통관에 한해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의 우편물가격 및 배송료란에 구매사이트 주소를 작성함
    - 다만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는 구입경로 등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으므로 전자상거래 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자상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물품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의 건수 비중은 2011년 36.84%(390만건)에서 2019년 67.42%(1,750만건)로 대폭 상승하였음
  - 전자상거래 금액 비중 또한 2011년 0.07%(3억 7,813만달러)에서 2019년 0.37%(18억 5,987만달러)로 약 5배 증가하였음
    - 전체 수입금액 대비 전자상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0.37%에 불과하지만 이는 개인이 소액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sup>65)</sup>

64) 정다운·이재선·김미정, 2019, p. 30.

65) 정재호·김한성, 2019, p. 40.

〈표 II-6〉 우리나라의 수입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단위: 천건, 천달러)

구분	전자상거래				전체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금액
2011	3,909	36.84	378,130	0.07	10,611	524,413,090
2012	5,099	43.06	493,866	0.10	11,842	519,584,473
2013	7,351	51.25	709,166	0.14	14,344	515,585,515
2014	8,942	54.85	974,732	0.19	16,303	525,514,506
2015	6,786	46.93	808,366	0.19	14,460	436,498,973
2016	7,631	49.18	915,173	0.23	15,517	406,192,887
2017	10,403	55.66	1,235,738	0.26	18,691	478,478,296
2018	13,107	60.79	1,588,058	0.30	21,560	535,202,428
2019	17,455	67.42	1,859,872	0.37	25,890	503,342,947

주: 해당 통계는 세관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입신고된 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어(간이통관 목록 제출 건은 미포함) 통계청 등 타 기관에서 집계된 통계와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 <https://www.bandtrass.or.kr/theme/e-commerce.do?command=THE005View&viewCode=THE00501&iframe=N>, 검색일자: 2020. 6. 3.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전자상거래 물품의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건수 기준 약 95%가 면세 통관되고 있음

○ 금액기준으로는 면세통관 비중이 2015년 79.7%에서 2019년 71%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면세통관의 금액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액의 수입물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표 II-7〉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물품 과세 현황

(단위: 천건, 천달러)

구분	면세통관				과세통관				합계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금액
2015	15,043	95.0	1,212,865	79.7	798	5.0	308,360	20.3	15,841	1,521,225
2016	16,583	95.3	1,273,749	77.9	812	4.7	360,791	22.1	17,395	1,634,540
2017	22,367	94.8	1,582,185	75.0	1,225	5.2	528,055	25.0	23,592	2,110,240
2018	30,589	94.8	2,004,347	72.8	1,657	5.1	750,597	27.2	32,255	2,754,944
2019	41,006	95.4	2,230,942	71.0	1,982	4.6	912,269	29.0	42,988	3,143,211

자료: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http://www-index-go-kr.nciashield.org/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http://www-index-go-kr.nciashield.org/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0. 6. 19.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특송물품 및 우편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건수 비중은 82%에 달하는 반면, 우편물 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건수 비중은 8%에 불과함
  -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건수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 67%에서 2019년 82%로 15%p 증가하였음
  - 우편물 중 전자상거래 건수 비중은 2015년 이후 6~8%를 유지하고 있음

〈표 II-8〉 우리나라의 특송물품 및 우편물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

(단위: 천건, 천달러)

구분	특송(목록통관 및 EDI 수입통관)						우편물(EDI 수입통관)					
	특송		전자상거래				우편물		전자상거래			
	건수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2015	23,501	15,806	15,842	67	1,521	10	50	130	4	8	8	6
2016	26,929	16,874	17,377	65	1,622	10	48	128	3	6	4	3
2017	33,341	18,518	23,592	71	2,110	11	46	123	3	6	4	3
2018	42,107	19,508	32,255	77	2,755	14	40	123	3	8	4	3
2019	52,536	19,952	42,988	82	3,143	16	37	138	3	8	3	2

자료: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http://www-index-go-kr.nciashield.org/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http://www-index-go-kr.nciashield.org/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0. 6. 3.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우리나라의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미국 및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전체 전자상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은 건수 기준 44.5%(1만 9,148건), 금액 기준 48.8%(15억 3,400달러)로 중국의 건수 기준 27%(1만 1,605건), 금액 기준 12.8%(4억 315달러)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의 점유율은 건수 기준으로 2018년 50.4%에서 2019년 44.5%로 5.9%p 감소하였으나, 중국은 2018년 20.1%에서 2019년 27%로 6.9%p 증가하였음

〈표 II-9〉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입 현황

(단위: 천건, 천달러)

2018					2019				
국가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국가	건수	비중	금액	비중
미국	16,246	50.4	1,471,596	53.4	미국	19,148	44.5	1,534,002	48.8
중국	6,480	20.1	310,270	11.3	중국	11,605	27.0	403,152	12.8
일본	2,594	8.0	172,390	6.3	독일	3,042	7.1	262,064	8.3
홍콩	1,935	6.0	154,838	5.6	홍콩	2,918	6.8	184,768	5.9
독일	2,400	7.4	212,812	7.7	일본	2,718	6.3	179,731	5.7
영국	902	2.8	238,370	8.7	영국	1,240	2.9	316,862	10.1
프랑스	349	1.1	31,076	1.1	호주	608	1.4	42,030	1.3
호주	288	0.9	22,745	0.8	프랑스	457	1.1	49,230	1.6
기타	1,062	3.3	140,847	5.1	기타	1,251	2.9	171,371	5.5
합계	32,255	100.0	2,754,944	100.0	합계	42,989	100.0	3,143,210	100.0

자료: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http://www-index-go-kr.nciashield.org/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http://www-index-go-kr.nciashield.org/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0. 6. 19.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나.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온라인쇼핑몰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로 정의됨<sup>66)</sup>
  - 이하에서는 B2C 전자상거래(이하 “해외직구”라고 함) 이용실태에 대해 살펴봄
- 양지선(2019)의 해외직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로 이용하는 해외직구 유형은 직접구매(39.9%), 구매대행(36.1%), 배송대행(24%) 순으로 나타남<sup>67)</sup>
  - 2018년 직접구매와 구매대행은 2016년 대비 각각 1.6%p, 3.5%p 증가하였으나 배송대행은 5.1%p 감소함

66) 주영준, 「해외직구 관련 규제정책의 국가 간 비교연구 - 미국, 유럽연합,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pp. 1~2.

67) 양지선, 2019, p. 47.

〈표 II-10〉 우리나라가 주로 이용하는 해외직구 유형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8년
직접구매	383(38.3)	392(39.9)
배송대행	291(29.1)	236(24.0)
구매대행	326(32.6)	355(36.1)

주: 1. 설문응답자는 해외직구 경험 대상자 983명이며, 복수응답함  
 2. ( ) 안은 비중임  
 자료: 양지선, 2019, p. 47.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해외직구 시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쇼핑몰은 2018년 기준 직접구매는 아마존, 배송대행은 몰테일, 구매대행은 11번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직접구매의 경우 미국 온라인쇼핑몰이 상위 3개, 약 68%를 차지하고 있음
  - 아마존(37.2%), 이베이(19.3%), 아이허브(11.7%)

〈표 II-11〉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유형별 온라인쇼핑몰 이용 현황(2018)

(단위: 명, %)

구분	직접구매			배송대행		구매대행(쇼핑몰형)	
	업체명	국가	명	업체명	명	업체명	명
1	아마존 (Amazon)	미국	280 (37.2)	몰테일	88 (24.3)	11번가	164 (32.0)
2	이베이 (eBay)	미국	145 (19.3)	유니옥션	43 (11.9)	옥션	115 (22.5)
3	아이허브 (I-herb)	미국	88 (11.7)	아이포터	42 (11.6)	지마켓	92 (18.0)
4	타오바오닷컴 Taobao	중국	45 (6.0)	오마이집	34 (9.4)	쿠팡	73 (14.3)
5	라쿠텐 (Rakuten)	일본	37 (4.9)	뉴욕걸스	32 (8.8)	네이버쇼핑 오픈마켓	68 (13.3)
6	알리바바 (Alibaba)	중국	36 (4.8)	호야USA	30 (8.3)		
7	큐텐 (Q-10)	싱가포르	35 (4.6)	포스트베이	28 (7.7)		
8	드럭스토어 (Drugstore)	미국	33 (4.4)	세븐존	25 (6.9)		

〈표 II-11〉의 계속

구분	직접구매			배송대행		구매대행(쇼핑몰형)	
	업체명	국가	명	업체명	명	업체명	명
9	월마트 (Walmart)	미국	32 (4.2)	이하넥스	20 (5.5)		
10	일본 아마존 (Amazon Japan))	일본	22 (2.9)	지니집	20 (5.5)		

주: 1. 설문응답자는 직접구매 392명, 배송대행 236명, 구매대행 355명으로, 각 항목별 복수응답함  
2. ( ) 안은 비중임

자료: 양지선, 2019, pp. 49~52.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다. 관부가세 납부방법

- 해외직구 이용 시 소액 수입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관부가세 납부대상인 경우 관부가세 납부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음
  -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하는 방법
  - 배송대행업체 및 특송업체의 관부가세 대납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은행 등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
  
- 해외직구의 대표적인 사이트인 아마존은 물품 주문 시 예상 관부가세 및 수수료를 함께 결제하는 관세보증금(Import Fees Deposit) 납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68)</sup>
  - 아마존은 실제 관세 등이 예상 관세보증금보다 적게 나오면 환불해 주고, 많이 나오면 아마존이 납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또한 아마존은 통관 시 고유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가 필수인 국가에 대해서는 ID number를 입력해야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sup>69)</sup>

68) 아마존 고객센터, "About Import Fees Deposit," <https://www.amazon.com/gp/help/customer/display.html/?nodeId=201910710>, 검색일자: 2020. 6. 23.

69) 아마존 고객센터, "About Customs, Duties & Taxes," <https://www.amazon.com/gp/help/customer/display.html?nodeId=201910420>, 검색일자: 2020. 6. 23.

- 고유식별번호가 요구되는 국가는 브라질, 칠레, 중국, 에콰도르, 인도, 이스라엘, 페루, 카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대만, 터키임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또는 생년월일(birth date)을 입력해야 하며 생년월일은 한국 시민이 아닌 경우(non-Korean Citizens)에 한해 입력할 수 있음

[그림 II-4] 아마존의 물품 결제 시 관세보증금 납부 서비스 예시

<b>Shipping &amp; Fee Details</b>	
Price	\$349.99
AmazonGlobal Shipping	+ \$28.06
<b>Estimated Import Fees Deposit</b>	<b>+ \$46.87</b>
<b>Total</b>	<b>\$424.92</b>

주: 아마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결제 전 화면을 캡처하여 저자 작성  
 자료: 아마존, <https://www.amazon.com/>, 검색일자: 2020. 6. 23.

- 배송대행업체 및 특송업체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관부가세 대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sup>70)71)</sup>
  - 관부가세 대납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대납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는 업체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음
    - 배송대행업체인 몰테일은 4%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송업체인 DHL은 1만 5천원 또는 75만원 초과 시 2%의 대납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 관부가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하거나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http://www.cardrotax.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음<sup>72)</sup>

70) 몰테일, 「초보자 직구가이드」, [http://post.malltail.com/useguides/malltail\\_guide\\_fee](http://post.malltail.com/useguides/malltail_guide_fee), 검색일자: 2020. 6. 23.

71) DHL, [https://www.dhl.co.kr/content/dam/downloads/kr/express/ko/shipping/documents\\_expandable/express\\_payment\\_instructions\\_kr\\_ko.pdf](https://www.dhl.co.kr/content/dam/downloads/kr/express/ko/shipping/documents_expandable/express_payment_instructions_kr_ko.pdf), 검색일자: 2020. 6. 23.

72) 몰테일, 「초보자 직구가이드」, [http://post.malltail.com/useguides/malltail\\_guide\\_fee](http://post.malltail.com/useguides/malltail_guide_fee), 검색일자: 2020. 6. 23.

-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 카드로택스는 국고금 신용카드 납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1.0% 이내의 카드수수료 등이 부과됨

### Ⅲ.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주요 도입국의 과세제도

#### 1. OECD

##### 가. 개요

- OECD는 1996년 6월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CFA) 산하 실무작업반(working party)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 및 행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sup>73)</sup>
  - 실무작업반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장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개념 정리,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IT 기술을 이용한 납세자 편의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함<sup>74)</sup>
  
- 1997년 11월 OECD는 핀란드에서 ‘국제적 전자상거래의 장애물 제거(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 주제하에 전자상거래 기본원칙 등을 채택함<sup>75)</sup>
  - 전자상거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음<sup>76)</sup>

73) 홍범교·안종석,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1, p. 44.

74) 홍범교,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정비』, 한국조세연구원, 2003, p. 2.

75) 권오현, 「디지털 상품의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관할권 문제」, 『조세연구』, 제9-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p. 185.

76) OECD, “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Turku(Finland),” *CONFERENCE REPORT*, 1997. 11. 19~21., pp. 21~22.

-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민간부문이 시장의 힘에 부응하여 추진되어야 함
  - 정부의 개입은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민간부문이 정책 수립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자상거래 관련 정부정책은 국제적으로 상호 호환되어야 하며 국제표준의 설정을 촉진해야 함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거래는 비전자적 상거래와 비교하여 조세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함
  - 전기통신 인프라에 대한 규제는 새로운 서비스와 신규 진입자가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자상거래의 참여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비밀성, 익명성, 내용 규제는 개인의 선택, 산업정책, 관련 법률 등에 따라야 함
  - 기업은 소비자에게 프라이버시, 기밀성, 내용 규제, 익명성과 관련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함
  - 고도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Global Information Society, GIGIS)에 대한 신뢰는 상호 합의, 교육, 보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 마련, 민간부문의 자율규제에 의해 추구되어야 함
- 1998년 10월에는 전자상거래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 과세기본원칙(the Ottawa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을 채택하여 향후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기초를 제시함<sup>77)</sup>
- 전자상거래 기본원칙은 <표 III-1>과 같음

---

77) 권오현, 2009, p. 184.

〈표 III-1〉 OECD 전자상거래 기본원칙

기본원칙	내용
중립성 (Neutrality)	전자상거래와 비전자상거래 간 과세는 중립적이고 공평해야 함
효율성 (Efficiency)	납세자의 협력비용과 세무당국의 징수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함
명확성 및 단순성 (Certainty and simplicity)	납세자가 세수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단순해야 함
효과성 및 공평성 (Effectiveness and Fairness)	과세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탈세 및 조세회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유연성 (Flexibility)	조세체계는 기술 및 산업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역동적이어야 함

자료: OECD,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1998, p. 4.

- 1999년 1월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지원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s, TAGs)을 두고 관련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며, 2001년 작업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표함<sup>78)</sup>
  - 기술지원그룹은 소비세 TAG(소비세), 기술 TAG(기술적인 input), 전문적인 데이터 조합 TAG(과세자료수집 등), 사업소득 TAG(조세조약 등), 조약 구분 TAG(소득의 성격을 구분) 등으로 5개로 구분됨
    - 소비세 TAG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확인함
    - 사업소득 TAG는 서버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
    - 조세조약 TAG는 사용자 소득에 대한 소득 구분을 함
    - 전문적인 데이터 조합 TAG는 징세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이후 남아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5개의 TAG를 3개의 TAG로 재편하여, 사업소득 TAG, 소비세 TAG, 순응·정보 및 증빙(Complianc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TAG로 재편함

78) 정지선·구자은,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동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4, pp. 36~37.

- 2003년 OECD는 B2C 전자상거래의 효과적인 조세징수 방안으로 간이사업자등록 (simplified registration system)을 제안하였고, 2017년 「국제 VAT/GST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을 통해 간이사업자등록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sup>79)</sup>
- 간이사업자등록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80)</sup>
- 간이사업자등록은 세무당국의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간이신고제도하에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은 제한됨
  - 신고 시 필요정보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환율, 공급가액, 납부세액 등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음
  - 납부절차의 비용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무당국의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납부(remit the tax due electronically)를 허용함
  - 장부 기장(Record keeping)은 전자적 기록관리 시스템을 사용함
  - 최종 소비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간이사업자등록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함
  - 기타 간이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국외 공급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자등록 기반 징수체계 마련이 요구됨
- 이하에서는 소액 수입물품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나.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징수 모델

- OECD는 2015년 「디지털 경제의 세금 문제해결 최종보고서(*Addressing the Tax*

79) OECD, “Electronic Commerce-Simplified Registration Guidance,” *Consumption Tax Guidance Series: Paper No. 2*, 2003, p. 2.

80)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OECD 국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내용 요약」,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9/view.do?seq=129843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2](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9/view.do?seq=129843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2), 검색일자: 2020. 7. 23.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2015 Final Report*)」를 통해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모델을 제시함<sup>81)</sup>

-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징수모델은 네 가지로 구분됨
  - ① 전통적 징수모델(the Traditional Collection model)
  - ② 구매자 징수모델(the Purchaser Collection model)
  - ③ 판매자 징수모델(the Vendor Collection model)
  - ④ 중개자 징수모델(the Intermediary Collection model)
- 각 모델의 특징 및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1) 전통적 징수모델

- 전통적 징수모델은 수입신고서에 근거하여 관세 및 세금을 결정하는 모델임<sup>82)</sup>
  - 수입신고서의 신고자는 수입하는 때 세관에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가 있음
    - 현재 소액 수입물품은 관리비용이 세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면세로 취급하고 있음
- 전통적 징수모델하에서 특송업체는 전자적 처리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나 우체국을 통한 수입의 경우에는 종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처리 및 통제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전자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나 우체국에 전자적 프로세스가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2) 구매자 징수모델

- 구매자 징수모델은 구매자가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

---

81) OECD, 2015, p. 194.

82) OECD, 2015, p. 195.

는 모델임<sup>83)</sup>)

- 구매자의 자진신고·납부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됨
  - 사전등록(Purchaser pre-registration): 구매자는 구매자의 세부사항을 세관에 사전 등록하고 수입시점에 식별번호를 통해 자진신고·납부함
  - 배송 시 실시간 신고납부(Real-time purchaser self-assessment on delivery): 구매자는 물품이 출고될 때 위임기관에 자진신고·납부함
  - 사후 신고납부(Post-release purchaser self-assessment): 구매자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 시 정기적 또는 매년 자진신고·납부함
- 구매자 징수모델은 자진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므로 구매자는 세율 등 제도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구매자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가능성이 높음
  - 세무당국은 모든 온라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됨
  - 구매자 징수모델은 최소한의 면세점을 두지 않는 한, 관리 부담 증가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3) 판매자 징수모델

- 판매자 징수모델은 국외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모델임<sup>84)</sup>
  - 국외 판매자는 해당 관할에 VAT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국외 판매자의 의무준수 이행을 위해 VAT 등록절차 단순화 등이 필요함
- 판매자 징수모델은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성이 증가되어 소액 수입물품의 면세점을 낮출 수 있는 유인이 됨
  - 세무당국 및 판매자에 추가 행정비용 및 준수비용이 소요되지만 VAT 등록절차

83) OECD, 2015, p. 196.

84) OECD, 2015, p. 197.

단순화 등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4) 중개자 징수모델

- 중개자 징수모델은 공급자를 국외 판매자가 아닌 현지 언어, 세법 등 이해도가 높은 중개자를 부가가치세의 징수·납부의무자로 간주하는 모델임<sup>85)</sup>
  - 중개자는 우편사업자, 특송업체, 전자상거래플랫폼, 금융중개업자 등이 있음
- 중개자 징수모델은 판매자 징수모델의 준수 의무 및 간이등록사항을 준용하되, 중개자가 부가가치세 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양적·질적 수집 및 처리 시스템 등이 필요함
  - 중개자 징수모델 설계 시 잠재적 세금 위험에 대한 중개자와 판매자 간의 책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함

#### 다.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 OECD는 2019년 중개자 징수모델 중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있어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The Role of digital platforms in the collection of VAT/GST on online sales*)」을 발표함<sup>86)</sup>
  - 동 보고서는 2015년 「국제 VAT/GST 가이드라인」과 2017년 「VAT/GST의 효과적인 징수에 관한 보고서(*Mechanisms for the Effective Collection of VAT/GST*)」를 보완하여 작성됨

85) OECD, 2015, p.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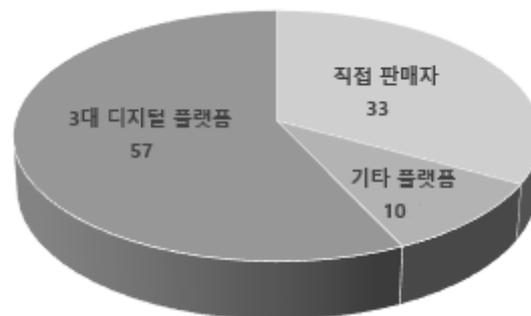
86) OECD, *The Role of digital platforms in the collection of VAT/GST on online sales, As presented for consideration at the fifth meeting of the Global Forum on VAT March 2019*, 2019.

## 1) 개요

- 디지털 경제의 성장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B2C 국제거래의 금액 및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sup>87)</sup>
  -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B2C 물품 판매량은 2016년 연간 2조달러에서 2021년 4조 5천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중 1조달러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로 추정됨
  -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가 간 물품공급의 약 3분의 2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57%가 3대 디지털 플랫폼인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Ⅲ-1] 글로벌 전자상거래 판매자(2017년)

(단위: %)



자료: OECD, *The Role of digital platforms in the collection of VAT/GST on online sales, As presented for consideration at the fifth meeting of the Global Forum on VAT* March 2019, p. 14.

- 현재 국가 간 소액 수입물품은 세수보다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이 더 크므로 많은 국가가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sup>88)</sup>

87) OECD, 2019, p. 13.

88) OECD, 2015, p. 184.

-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인터넷 쇼핑이 존재하지 않는 등 면세대상 소액 수입물품 거래규모가 적었음
  - 그러나 기술혁신으로 디지털 플랫폼 및 판매자는 더 적은 비용과 더 짧은 시간을 들여 전 세계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액 수입물품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sup>89)</sup>
- 국가 간 소액물품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B2B 및 무형자산의 국제거래는 「국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작동되고 있지만 B2C에는 비효과적이므로 별도의 징수 방안 마련이 필요함<sup>90)</sup>
- 소액 수입물품의 주요 시장 거래량은 2014년 440억건에서 2016년 650억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매년 17~28%씩 증가하고 있음<sup>91)</sup>
- 소액물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는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국내 소매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고 국내 판매자의 해외 이전에 대한 동기 부여로 국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OECD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역할을 모색함<sup>92)</sup>
- OECD는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로 디지털 플랫폼이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에 대한 책임자로 간주하는 완전책임모델(Full VAT/GST liability regime)을 제시함
  - 또한 부가가치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연대납세의무모델(Joint and several liability), 정보공유모델(Information sharing obligation), 자발

89) OECD, 2019, p. 31.

90) OECD, 2019, p. 13.

91) OECD, 2019, p. 31.

주요 시장은 13개국으로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임

92) OECD, 2019, p. 19.

적 협력모델(Formal co-operation agreements) 등을 제시하고 있음<sup>93)</sup>

## 2) 완전책임모델(Full VAT/GST liability regime)

- 완전책임모델은 부가가치세 목적상 디지털 플랫폼을 공급자로 간주하는 모델임<sup>94)</sup>
  - 완전책임모델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assessing), 징수(collecting), 납부(remitting)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완전책임모델의 기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음<sup>95)</sup>
  - ① 판매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함
  - ② 디지털 플랫폼은 부가가치세 목적상 공급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확정, 징수, 납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다만 세무당국은 디지털 플랫폼이 선의이고 의무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 경우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 판매자는 디지털 플랫폼과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판매자에 의한 사기가 발생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이 제한된 경우 부가가치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③ 판매자는 일반 부가가치세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 ④ 소비자는 구매대금을 디지털 플랫폼 또는 판매자에게 지급함
    - 디지털 플랫폼에 지급하는 경우 디지털 플랫폼은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에 납부함
    -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디지털 플랫폼은 공급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세무당국에 납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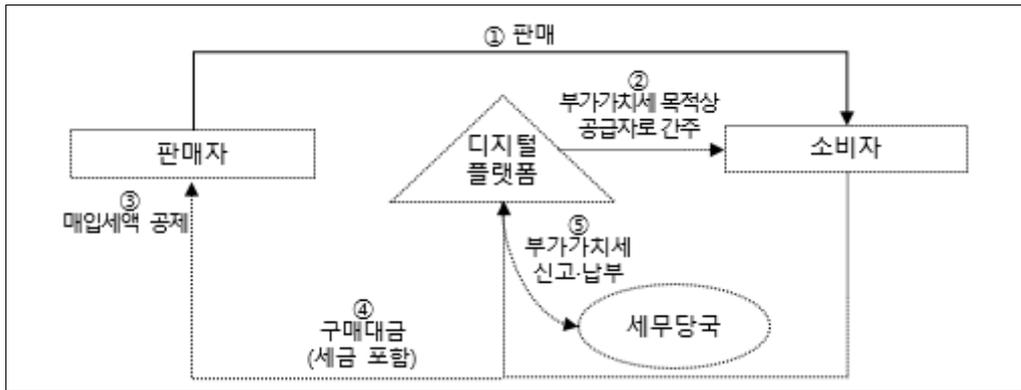
93)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관련 디지털 플랫폼 역할」, [http://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6/view.do?seq=11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http://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6/view.do?seq=11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 p. 2. 검색일자: 2020. 6. 2.

94) OECD, 2019, p. 23.

95) OECD, 2019, pp. 23~25.

⑤ 디지털 플랫폼은 부가가치세 확정, 징수, 납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그림 III-2] 완전책임모델의 기본 운영방식



주: 번호는 시간 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자료: OECD(2019), p. 23.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완전책임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 징수 수단, 적용범위 등을 고려해야 함<sup>96)</sup>
  - 디지털 플랫폼은 부가가치세 결정을 위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함
  - 또한 완전책임모델을 다음의 어디까지 적용할지 범위를 결정해야 함<sup>97)</sup>
    - 해외 디지털 플랫폼 vs 국내 플랫폼
    - 해외 판매자 vs 국내 판매자
    - 서비스 및 무형자산 vs 재화
    - 소액 수입물품 vs 전체 수입물품
    - B2B vs B2C

□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소액 수입물품 운영방식은 앞서 언급한 기본 운영방식과

96) OECD, 2019, p. 26.

97) OECD, 2019, pp. 28~33.

동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sup>98)</sup>

- ① 공급업체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면세점 이하의 소매물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함
- ② 디지털 플랫폼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세무당국은 디지털 플랫폼의 선의 및 합리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 ③ 판매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 세무당국은 공급업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를 고려해야 함
- ④ 소비자는 구매대금을 디지털 플랫폼 또는 판매자에게 지급함
  -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디지털 플랫폼은 판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세무당국에 납부함
  - 이 경우 세무당국은 판매자의 잠재적인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대손세액공제(bad debt relief arrangement) 허용을 고려할 수 있음
- ⑤ 디지털 플랫폼은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일반적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⑥ 디지털 플랫폼은 소매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 징수하고 세무당국에 납부함
  - 국경에서 완전책임모델이 적용되는 소매 수입물품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관절차가 마련되어야 함<sup>99)</sup>
    - 수입물품의 저평가 및 분류 오류(misclassification)에 대한 확인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세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 플랫폼은 관할 세무당국에 VAT를 등록하고 해당 관할 세무당국의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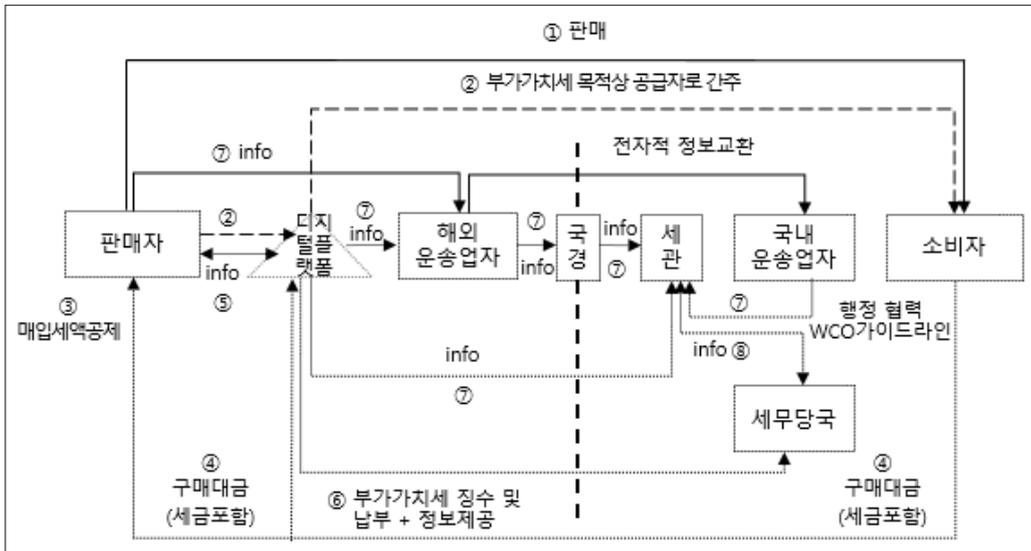
98) OECD, 2019, pp. 42~44.

99) 전통적인 통관절차에 따른 수입물품은 국경에서 수입업자, 특송업체, 우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나 완전책임모델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소매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하여 국경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매 수입물품인지 여부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통관절차가 필요함

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함

- 디지털 플랫폼은 관할 지역에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등록(simplified registration)이나 납부전용제도(pay-only regime)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 세무당국은 세관과 함께 완전책임제도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명확히 해야 함
  - 디지털 플랫폼의 등록번호를 포함한 수입물품 관련 서류, 부가가치세 납부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통관절차가 적용됨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절차는 현행과 같이 수입 시 수입업자 또는 신고인이 진행함
- ⑦ 디지털플랫폼은 부가가치세가 이미 납부되었다는 정보를 적시에 세관 당국에 제공하기 위해서 운송업자(우편사업자, 특송업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⑧ 세관과 세무당국은 정보교환 등 행정 협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그림 III-3] 완전책임모델하에서의 소액 수입물품 운영방식



자료: OECD, 2019, p. 42.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3) 연대납세의무모델(Joint and several liability)

- 연대납세의무모델은 디지털 플랫폼에 부가가치세 관련 주된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납세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모델임<sup>100)</sup>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공급한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 플랫폼에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함<sup>101)</sup>
  - 연대납세의무모델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병행하여 실행할 수도 있음
    - 방안 1: 향후 발생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부과
    - 방안 2: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부과
  
- (방안 1) 디지털 플랫폼은 판매자의 향후 발생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 세무당국이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불이행을 디지털 플랫폼에 알렸으나 디지털 플랫폼이 일정 기간 내 부가가치세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디지털 플랫폼은 판매자의 향후 판매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sup>102)</sup>
    - 적절한 조치란 세무당국에서 통지받은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납부하게 하거나 판매자를 플랫폼에서 탈퇴시키는 것을 말함
  
- (방안 2) 디지털 플랫폼이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불이행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 디지털 플랫폼은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sup>103)</sup>
  - 합리적인 예측이란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를 말함
    - 디지털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요청하고 번호가 유효한지 확

100)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관련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http://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6/view.do?seq=11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http://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6/view.do?seq=11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 p. 2. 검색일자: 2020. 6. 2.

101) OECD, 2019, p. 63.

102) OECD, 2019, p. 63.

103) OECD, 2019, p. 64.

인하는 등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가 있음

- 다만 디지털 플랫폼이 판매자를 플랫폼에서 탈퇴시키거나 판매자의 미등록 또는 의심사례를 세무당국에 알리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됨

#### 4) 정보공유모델(Information sharing obligation)

□ 정보공유모델은 디지털 플랫폼에 부가가치세의 징수·납부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의무 준수 관련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모델임<sup>104)</sup>

- 디지털 플랫폼은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공급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청구하고 처리하였는지 등 부가가치세 준수 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임

- 디지털 플랫폼의 공유 가능한 정보목록은 다음과 같음<sup>105)</sup>

- 물품명
- 공급일자
- 공급가액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식별번호
- 부가가치세 금액 및 세율
- 배송업체
- 배송업체 주소
- 주문처리 물류창고(fulfilment warehouse)
- 고객 위치
- 고객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 결제 서비스 업체
- 송장(invoice) 및 기타 서류 등

---

104) OECD, 2019, p. 51.

105) OECD, 2019, p. 53.

- 정보공유는 세무당국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음<sup>106)</sup>
  - 방안 1: 디지털 플랫폼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판매기록을 보관하고 세무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함
  - 방안 2: 디지털 플랫폼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 주기적으로 세무당국에 제공함
    - 필요한 형식과 정보, 제출기한 등은 관할 세무당국이 지정할 수 있음

#### 5) 자발적 협력모델(Formal co-operation agreements)

- 자발적 협력모델은 디지털 플랫폼이 세무당국과 협약을 맺고 부가가치세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 모델임<sup>107)</sup>
  - 디지털 플랫폼은 부가가치세 준수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 협약을 맺고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
    - 주기적, 자발적 정보 공유
    - 판매자 교육
    - 판매자의 의무 위반 시 세무당국에 통보
    - 세무당국 통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 자발적 협력모델은 완전책임제도 실행을 위한 중간단계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됨

#### 라. OECD 회원국의 소액 수입물품 면세점 현황

- OECD의 대부분 회원국은 2018년 1월 1일 현재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점을 두고 있음

---

106) OECD, 2019, p. 53.

107) OECD, 2019, p. 56.

○ 다만 칠레, 프랑스, 터키는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별도의 면세제도가 없음

□ 소액 수입물품 면세점 한도는 대부분 국가가 미화 50달러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 OECD 국가 중 100달러 이상을 면세점으로 두고 있는 국가는 일본(100달러), 우리나라(150달러) 정도임

-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2018년 7월, 2019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해 면세점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 EU 회원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면세점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임

〈표 III-2〉 OECD 회원국의 소액 수입물품 면세점 현황(2018. 1. 1.)<sup>1)</sup>

국가명	통화	면세점(자국통화)	면세점(미국달러) <sup>2)</sup>
호주	AUD	1,000	679
오스트리아	EUR	22	27
벨기에	EUR	22	27
캐나다	CAD	20	16
칠레	CLP	0	0
체코	EUR	22	43
덴마크	EUR	10	10
에스토니아	EUR	22	40
핀란드	EUR	22	24
프랑스	EUR	0	0
독일	EUR	22	28
그리스	EUR	22	37
헝가리	EUR	22	51
아이슬란드	ISK	2,000	14
아일랜드	EUR	22	27
이스라엘	USD	75	75
이탈리아	EUR	22	31
일본	JPY	10,000	100
한국	USD	150	150
라트비아	EUR	22	44
리투아니아	EUR	22	48

〈표 Ⅲ-2〉의 계속

국가명	통화	면세점(자국통화)	면세점(미국달러) <sup>2)</sup>
룩셈부르크	EUR	22	25
멕시코	USD	300/50	300/50
네덜란드	EUR	22	27
뉴질랜드	NZD	400	272
노르웨이	NOK	350	34
폴란드	EUR	22	52
포르투갈	EUR	22	37
슬로바키아	EUR	22	45
슬로베니아	EUR	22	37
스페인	EUR	22	33
스웨덴	EUR	22	25
스위스	CHF	65	53
터키	TRY	0	0
영국 <sup>1)</sup>	GBP	15	22

주: 1) 소액 수입물품 면세점은 해외 공급업체가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개인 간 교환이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은 포함하지 않음

2) 달러 환산은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PPP란 국가 간 가격 수준 차이를 제거하여 각국의 구매력을 균등하게 하는 환율을 말함

자료: OECD Ilibrary, "VAT relief for imports of low-value goods,"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consumption-tax-trends-2018/vat-relief-for-imports-of-low-value-goods\\_ctt-2018-table17-en](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consumption-tax-trends-2018/vat-relief-for-imports-of-low-value-goods_ctt-2018-table17-en), 검색일자: 2020. 6. 16.

## 2. EU

### 가. 개요

#### 1) 개관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유럽의 통일된 부가가치세 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집행 및 운용은 각 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을 통해 운영

하도록 함

- EC에서 개별 국가가 규정하도록 명확히 위임한 부분 이외에, EU 회원국이 EU의 부가가치세 지침과 달리 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EC에 보고, 허가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함

□ 현재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은 1994년 1월에 시행된 「Transitional Directive」를 토대로 함

- 1993년에 국경 간 거래에 부과되는 재정적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Transitional Directive를 제정함<sup>108)</sup>
- Transitional Directive의 주요 내용은 EU 내 재화 및 용역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등의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공급지국 과세원칙(Origin principal)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으로 전환하는 것을 담고 있음<sup>109)</sup>
  - 유럽은 당초 공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였으나, 회원국별 부가가치세 세율차이로 인한 시장왜곡, 누적 재정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변경함

□ 한편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EU 역내외 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EC는 2010년 중반 이래로 관련 EU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sup>110)</sup>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제의 간소화, EU 역내 사업자를 위한 공정한 시장 조성, EU 회원국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함

108) Walter, Hellerstein and Timothy Gills, *The VAT in the European Union*, Tax Analysts, 2010, p. 464.

109) Craig A. Hart, "The European Community's Value-Added Tax System: Analysis of the New Transitional Regime and Prospects for Further Harmonization,"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2 Issue 1, 1994, pp. 7~8.

110) Grant Thornton, "Briefing Paper: More EU VAT changes on the way....," <https://www.grantthornton.co.uk/globalassets/briefing-paper-eu-vat-changes.pdf>, 검색일자: 2020. 7. 13.

- 2016년 조사에 의하면 사업자는 그가 거래하는 EU 회원국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이행 비용이 평균적으로 연 8천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EU 역외 사업자는 일정 수준 이하의 물품 공급(수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받고 있으나, EU 사업자의 경우 최대 27%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EU 사업자는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존재함
- 이러한 EU 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EU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50억유로의 세수 손실을 보고 있음

## 2) 주요 논의 과정

- EC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물품 및 서비스의 국경을 넘는(cross-border) 거래에 있어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② 최종소비자가 속한 회원국에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여 왔음<sup>111)</sup>
- 2014년 EC의 전자상거래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E-commerce)은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철폐를 최초로 제안하였고,<sup>112)</sup> 2015년 5월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the VAT exemption for importation of small consignments* 라는 보고서를 발간함
  - 동 보고서에 의하면, 사기(fraud), 과소신고를 포함한 허위신고로 인한 소액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세수 손실 규모는 1999년에는 1억 6,800만유로에서 2013년에는 7억 5,800만유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11) EC, "Modernising VAT for cross-border e-commerce,"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modernising-vat-cross-border-ecommerce\\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modernising-vat-cross-border-ecommerce_en), 검색일자: 2020. 7. 7.

112) Tax-News.com, "EU Study Released On Low Value Consignment Relief," [https://www.tax-news.com/news/EU\\_Study\\_Released\\_On\\_Low\\_Value\\_Consignment\\_Relief\\_\\_\\_68218.html](https://www.tax-news.com/news/EU_Study_Released_On_Low_Value_Consignment_Relief___68218.html), 검색일자: 2020. 7. 13.

- 2015년 1월 1일부터는 국외 사업자가 EU 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거래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하였으며,<sup>113)</sup> MOSS(Mini One Stop Shop) 제도가 최초 시행됨
  - EU 내로의 통신(telecommunications), 방송(broadcasting), 전자적(electronic) 매체(TBE services)에 의한 B2C 서비스 공급에 대해 MOSS(Mini One Stop Shop)라는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납부 제도가 마련됨
  
- 2017년 12월 5일 EC는 국제 무역의 촉진, 부가가치세 세수 확보, EU 사업자에게의 공정한 경쟁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Strategy for the EU Digital Single Market)’으로서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패키지(VAT e-commerce package)’를 제안함
  - MOSS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다음의 거래에도 적용되는 OSS (One Stop Shop) 제도로 개편함
    - TBE 서비스 이외에도 모든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함
    -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물품의 EU 역내 원거리 공급(Intra-EU distance sales)에도 적용함
    -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22유로)를 폐지하고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150유로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도 EU 역내 원거리 공급 규정을 적용함<sup>114)</sup>
  - 전자적 인터페이스를 통한 물품 공급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함<sup>115)</sup><sup>116)</sup>
  
- 2019년 3월 14일 EC는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패키지 도입에 상응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의 대폭 축소된

113) Council Directive 2006/112/EC article 58, Council Directive 2008/8/EC 등

114) 이를 import scheme이라고 함

115) 전자적 인터페이스란 플랫폼, 포털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온라인 중개시장을 지칭함

116) 구체적 규정은 p. 52의 ‘라.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서 설명함

자료(super-reduced data set)를 통한 세관의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함<sup>117)</sup>

-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22유로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의 간편신고만을 규정하였으나, 이를 관세 부과 면세점인 150유로의 수입물품에까지 확대함<sup>118)</sup>
- 표준수입신고(standard declaration) 시에 비해 3분의 1 수준의 자료만이 요구됨
- 2021년부터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수입자 및 세관 모두에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

□ 2019년 11월 21일 EC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 적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함

- 물품의 원거리 공급(distance sales)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함<sup>119)120)</sup>
- 전자적 인터페이스를 통한 물품의 공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sup>121)122)</sup>

□ 2020년 2월 12일 EC는 추가적인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패키지를 완성함<sup>123)</sup>

- 동 시행규칙에는 부가가치세 OSS 제도상의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 2020년 5월 8일 EC는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의 확산과 봉쇄조치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패키지 시행을 6개월 연기하기로 제안함<sup>124)</sup>

117) Regulation (EU) 2019/1143

118) Regulation (EU) 2015/2446

119) Council Directive (EU) 2019/1995

120) 구체적 내용은 p. 46의 '나.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서 설명함

121)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26

122) 구체적 규정은 p. 52의 '라.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서 설명함

12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194

- 관련 규정 시행을 당초 2021년 1월 1일에서 6개월 뒤인 2021년 7월 1일 시행함으로써 EU 회원국 및 사업자에게 준비할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임
- 이하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패키지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살펴봄

## 나.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1) EU 역내로부터의 공급<sup>125)</sup>

- 온라인 거래방식으로 EU 역내에서 EU 회원국의 소비자가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sup>126)</sup>
  - 다만 관세는 100% 면제됨
- 현행 EU 역내 원거리 공급에 대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공급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비지국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당해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함<sup>127)</sup>
  - EU 역내 물품의 원거리 공급에 대한 공급장소는 소비지국으로 간주함
- 다만 사업자의 해당 물품의 연 공급액이 소비지 국가가 설정한 기준점(3만 5천유로 또는 10만유로) 이하라면 물품이 발송되는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공

124) EC, "Taxation commission proposes post ponement taxation rules due coronavirus crisis,"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ews/taxation-commission-proposes-postponement-taxation-rules-due-coronavirus-crisis\\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ews/taxation-commission-proposes-postponement-taxation-rules-due-coronavirus-crisis_en), 검색일자: 2020. 7. 7.

125) EC, "Buying goods online coming from within the European Un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individuals/buying-goods-services-online-personal-use/buying-goods/buying-goods-online-coming-from-within-eu-union\\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individuals/buying-goods-services-online-personal-use/buying-goods/buying-goods-online-coming-from-within-eu-union_en), 검색일자: 2020. 7. 14.

126) RVD(Recast VAT Directive: EU Council Directive 2006/112/EC) article2(b)

127) 이를 'distance sales rule'이라 함(RVD article 33)

급지국에 납부할 것을 선택할 수 있음<sup>128)</sup>

- 즉 기준점 이하의 EU 역내 공급에 대하여는 공급지국의 국내거래로 취급할 수 있음
- 그러나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물품의 EU 역내 원거리 공급에도 OSS 제도를 도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함<sup>129)</sup>
  - OSS 제도를 통해 EU 내 한군데에서만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일원화하여 이행할 수 있게 됨
  - 기존에는 다른 EU 회원국으로의 원거리 공급액이 연 3만 5천유로 또는 10만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으나, 이는 지나치게 많은 행정비용을 수반하는 것임<sup>130)</sup>
    - 사업자는 해당 EU 회원국마다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와 기록 보관 의무 이행의 어려움에 직면함
-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 연 원거리 공급액이 1만유로 이하일 경우에는 공급 장소를 공급자가 설립된 EU 회원국으로 보아 동 공급지국에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함

## 2) EU 역외로부터의 공급<sup>131)</sup>

- 수입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수입자(최종 소비자)가 속하는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가 이루어짐<sup>132)133)</sup>

128) RVD article 34

129) OSS 제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함

130) Ecommerce Europe, *EU VAT Reform: pros and cons for online merchants*, 2017. 6., p. 7.

131) EC, "Buying goods online coming from a non-European Union country,"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individuals/buying-goods-services-online-personal-use/buying-goods/buying-goods-online-coming-from-a-noneu-union-country\\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individuals/buying-goods-services-online-personal-use/buying-goods/buying-goods-online-coming-from-a-noneu-union-country_en), 검색일자: 2020, 7. 14.

- 다만 1983년 이래로 EU 역외국으로부터 EU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점(10~22유로)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sup>134)135)</sup>
  - EC는 B2C 방식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업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0 유로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의 재량으로 22유로까지 면세점을 확대할 수 있게 함<sup>136)</sup>
  - 소액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데에 있어 시간과 행정비용이 그 효익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되므로, 관련 판매자, 소비자 및 세무당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임
  
-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점 판단은 관세와 운송비, 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액으로 함
  - 다만 담배, 주류, 향수는 물품 금액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액 수입물품의 규모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폐지하고 모든 소액물품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함<sup>137)</sup>
  -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EU 사업자와의 경쟁적 측면에서의 불공정 유발 등의 문제점을 야기함
  - 부가가치세 면세점의 존치는 물품 가액의 과소신고, C2C 방식의 선물 위장 거래, 물품의 분할 수입(split supplies) 등을 유발하여 조세회피 가능성을 상존하게 함<sup>138)</sup>

---

132) RVD article 2(d)

133) RVD article 32

134) 부가가치세 면세점으로 덴마크는 10유로, 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에서는 22유로, 영국에서는 15파운드 또는 39파운드를 설정하고 있음

135) Directive 83/181/EEC

136) RVD Article 143(1)(b)

137) Council Directive 2009/132/EC Title IV를 삭제함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물품 가액에 관세와 운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함
-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점 폐지와 더불어 150유로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import scheme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함
  - import scheme이란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도 EU 역내 원거리 공급으로 보아 OSS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 최종 소비지국으로 운송하기 전 공급자에 의해 물품이 수입된 EU 역내 국가에서 최종 소비지국(수입지국과 최종 소비지국의 일치 여부와 무관)으로 원거리 공급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함<sup>139)</sup>
  - 즉 EU 역외 사업자는 EU 회원국 중 하나 이상에서 부가가치세 목적상 OSS 등록을 하여야 함
    - 경우에 따라서 국외 사업자는 EU 내 중개인(intermediary)을 지정하여 OSS를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sup>140)</sup>
- import scheme이 적용되는 경우 EU 내 OSS 등록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할 때 EU 내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OSS에 의해 확인된 소비지국(EU 회원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이러한 물품은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고 세관에서도 신속 출고(fast release)가 가능함<sup>141)</sup>
- 만일 이러한 import scheme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직접 부가가치세를 징수함<sup>142)</sup>

---

138) European Commission, 2016, p. 83.

139) RVD Article 33(2)

140) RVD Article 369l (2)

141) RVD Article 143(1)

142) RVD Article 369y

- 예를 들면, 우편업자(postal operator), 택배회사(courier firm)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세관 당국에 전자적 방식으로 월별 신고·납부함
- 한편 관세의 최소 부과기준인 150유로는 2021년 7월 1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됨

#### 다. 간이사업자등록제도(OSS)<sup>143)</sup>

- 국외 사업자는 EU의 OSS 제도를 통해 EU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만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여 간소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음
  - OSS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국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장소를 파악하여 해당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를 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 OSS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적 용역 공급에 적용되던 MOSS를 물품 거래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격으로 함
- OSS에서 사업소나 고정사업장을 둔 EU 내 사업자는 Union Scheme을 적용하고, EU 외 사업자는 non-Union scheme을 적용할 수 있음<sup>144)</sup>
  - Union Scheme의 사업자는 사업장 혹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고, 소비지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함
    - 이때 소재지는 법인은 본사가 있는 장소,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임
    - 이 체계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장 혹은 고정사업장 소재지에서 이루어진 공급거래는 OSS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143) Avalara, "EU 2021 One Stop Shop (OSS) VAT return for e-commerce," <https://www.avalara.com/vatlive/en/vat-news/eu-2021-one-stop-shop-vat-return-for-e-commerce.html>, 검색일자: 2020. 7. 10.

144) EC, "VAT on digital services (MOSS scheme),"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vat-customs/moss-scheme/index\\_en.htm](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vat-customs/moss-scheme/index_en.htm), 검색일자: 2020. 7. 13.

- non-Union Scheme은 EU 회원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비지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함<sup>145)</sup>
  - EU 역외 사업자는 EU 내에 사업장 혹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이 EU 내에 OSS 등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OSS를 신청한 사업자는 신고기한 내에 개별 국가에서 소비된 물품의 총금액과 개별 국가의 세율 및 세액 등을 포함하여 OSS를 등록한 국가에 신고하여야 함
  - 만일 OSS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회원국에 일반 사업자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
- OSS를 신청한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OSS를 신청한 사업자는 소비지국의 국가 코드, 소비지국의 일반·감면 부가가치세율, 과세대상 금액,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신고대상기간은 매분기 단위임
  - 만일 대상기간에 신고 오류가 있었다면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 없이 다음 신고대상 기간에 과거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음
- OSS에 등록된 회원국은 소비지국이 사업자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고, 1개월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OSS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OSS에서 배제됨
  - 소비지국 세무당국은 OSS에 등록된 회원국에 사업자의 자료를 요청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음

145) EC, "The Mini One Stop Shop,"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content/mini-one-stop-shop\\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content/mini-one-stop-shop_en), 검색일자: 2020. 7. 13.

- 다만 EU는 B2C 거래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둬
  - 공급가액(VAT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1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소재하는 관할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2년 동안 계속하여 적용함
  
- 결국 OSS 제도 도입의 장점으로는 부가가치세 관련 이행비용의 실질적 절감, 자유무역 원활화, EU 사업자와 비EU 사업자와의 공정경쟁 토대 조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별 EU 회원국은 연 70억유로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sup>146)</sup>

#### 라.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sup>147)</sup>

- 원칙적으로 온라인 중개시장(플랫폼, 포털 등)을 통한 물품 판매의 계약 당사자는 원 판매자와 소비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음
  - 중개시장 운영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광고나 결제서비스의 제공 등 물품 판매의 단순한 촉진 활동만을 수행하기 때문임
  
- 그러나 2021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중개시장의 운영자(Online Intermediary Platforms, 이하 ‘플랫폼 사업자’라 함)는 특정 조건이 성립할 경우, 물품의 원 판매자를 갈음하여 부가가치세 목적상 공급자로 간주되며,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책임이 발생함

146) EC, “Modernising VAT for cross-border e-commerce,”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modernising-vat-cross-border-ecommerce\\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modernising-vat-cross-border-ecommerce_en), 검색일자: 2020. 7. 10.

147) RVD Article 14a, Council Directive (EU) 2017/2445,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26 참조

- 즉 플랫폼 사업자는 B2B 거래로 물품을 공급(부가가치세 면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적으로는 EU 소비자에게 B2C 거래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함
  - EU 역외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접수받은 주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 의해 운영되는 유럽 소재 사업장(창고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
    - 유럽 소비자가 제3국으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이미 EU 내에 선적되어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온라인 중개시장을 통하여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EU 소비자로의 공급에 대해서 기존 규칙으로는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세수 손실이 초래되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음<sup>148)</sup>
- 첫째, ‘중개시장’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함
    - 전자적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플랫폼, 포털 등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며, 물품을 판매하려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과세공급을 일으키는 계약을 성사 시킴
  - 둘째, ‘판매를 가능(용이)하게 하는(facilitating the sale)’ 역할을 하여야 함
    - 판매 조건을 통제할 수 있거나 물품 판매대금 부과에 대한 권한을 갖거나 물품 배송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경우에는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봄
    - 그러나 단순한 결제 서비스의 제공이나 물품의 광고 및 게시만을 하는 행위, 물품 구매 소비자를 다른 중개시장으로 재지정(redirecting)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지 않음
  - 셋째,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거래 범위에 속하여야 함
    - ① 150유로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을 EU 내 원거리 공급(판매자가 EU 사업자

148) Avalara, “EU July 2021 marketplaces VAT deemed supplier rules,” <https://www.avalara.com/vatlive/en/vat-news/2021-eu-marketplaces-vat-deemed-supplier.html>, 검색일자: 2020. 7. 15.

인지 EU 역외 사업자인지 여부 불분)

- ② 판매자가 EU 역외 사업자인 경우 물품을 EU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물품 가액 제한 없음)

〈표 III-3〉 EU의 소액물품 관련 사례

현황	2021년 7월 1일 이후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거주자인 A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이용하여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려 함</li> <li>- 물품가액은 150유로에 미달하고, 원산지는 중국이며 프랑스로 최초 수입됨</li> <li>- 현재 A는 프랑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프랑스 소비자로부터 2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예정임</li> <li>- 또한 A는 이탈리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탈리아 소비자로부터 22%의 부가가치세를 이탈리아에 납부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사업자는 간주공급자로서 프랑스로의 물품 수입에 대하여 OSS에 의한 부가가치세 의무를 부담함</li> <li>- 즉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시점에서 프랑스 및 이탈리아 소비자로부터 20% 및 22%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를 같음함</li> <li>- A는 다른 목적(물품 재고 출고를 위한 창고지 사용, 15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판매 등)이 없다면 프랑스 및 이탈리아에서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는 미국 거주자이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이용하여 프랑스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프랑스 및 독일의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려 함</li> <li>- B는 현재 프랑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며 프랑스 국내 매입 및 매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절차를 이행하고 있음</li> <li>- 또한 B는 독일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며 독일 소비자로부터 19%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사업자는 프랑스 및 독일 소비자에 대한 간주공급자가 됨</li> <li>- 즉 플랫폼 사업자는 프랑스 및 독일 각각에서 사업자 등록을 이미 하였다면 각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이행하면 되고, 만일 각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OSS에 의할 수 있음</li> <li>- B는 다른 목적(물품 재고 출고를 위한 창고지 사용 등)이 없다면 프랑스 및 독일에서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li> </ul>

자료: Avalara, "EU July 2021 marketplaces VAT deemed supplier rules," <https://www.avalara.com/vatlive/en/vat-news/2021-eu-marketplaces-vat-deemed-supplier.html>, 검색 일자: 2020. 7. 20.

-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잠재적인 간주공급 대상자이므로 관련 거래에 대한 기록 및 보관 의무가 부여됨
- 해당 물품의 소비지국 세무당국이 자국에서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 거래일이 속한 연도로부터 10년간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 만일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산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소 납부를 초래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소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한편 2020년 2분기 현재 EC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하여 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에 향후 보다 강력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sup>149)</sup>
- 한편 2021년 7월 1일 이후에 EC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미 몇몇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sup>150)</sup>
  - 영국에서는 유럽 최초로 2016년 9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미납 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에는 「재정법(Finance Act)」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그들의 웹사이트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번호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함
  - 독일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관련 거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였으며, 판매자가 독일 등록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미납세액의 납부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마련함
  - 이탈리아에서는 2019년 4월부터 플랫폼 사업자에게 특정한 과세정보를 분기 단위로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러한 특정 정보가 제출되지 않거나

149) EC, "Tax fraud and evasion - better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tax authorities on exchanging information,"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initiatives/dac\\_renewal\\_en](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initiatives/dac_renewal_en), 검색일자: 2020. 7. 13.

150) kluwertax, "Online Marketplaces and EU VAT: Global Reach but Compliance Still Local," [http://kluwertaxblog.com/2020/02/26/online-marketplaces-and-eu-vat-global-reach-but-compliance-still-local/?doing\\_wp\\_cron=1594103102.8128120899200439453125](http://kluwertaxblog.com/2020/02/26/online-marketplaces-and-eu-vat-global-reach-but-compliance-still-local/?doing_wp_cron=1594103102.8128120899200439453125), 검색일자: 2020. 7. 13.

부정확한 경우 또는 판매자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함

- 프랑스에서는 2020년 1월부터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자의 공급이 프랑스 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함

### 3. 호주

#### 가. 개요

##### 1) 개관

- 호주는 2018년 7월 1일부터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를 징수하는 새로운 조치를 입법화함<sup>151)</sup>
  - 개정 전에는 1천호주달러 이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였음
  - 호주는 법 개정으로 소액 수입물품의 면세점 한도를 없애고 국외 판매자 등이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판매자 모델(vendor collection model)을 도입함
    - 국외 판매자 등이란 국외 판매자(foreign vendors), 배행대송업체(redeliverers), 전자유통플랫폼 사업자(electronic distribution platform, 이하 ‘플랫폼 사업자’라 함)를 말함

---

151) Productivity Commission, *Collection Models for GST on Low Value Imported Goods, Productivity Commission Inquiry Report Overview & Recommendation, No. 86*, 2017, pp. 3~4.

## 2) 주요 논의 과정

- 호주는 2000년 7월 1일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를 도입하였음<sup>152)</sup>
  - 면세되는 소액 수입물품은 1천호주달러 이하임
- 2009년 호주 소매업계는 국내 공급자들과의 불리한 경쟁여건 등을 주장하며 소액 수입물품의 면세점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음<sup>153)</sup>
  - 호주 세무당국은 면세점을 낮추었을 때 증가하는 행정비용과 추가 세수를 고려할 때 면세한도를 조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함
  - 호주 공인회계사협회(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도 현행 규정하에서 소액 수입물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세수 손실은 총세수의 0.14%, 부가가치세의 약 1%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판단함
- 2011년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소액 수입물품의 면세점 하향 조정 여부를 검토함<sup>154)</sup>
  - 위원회는 검토결과 소액 수입물품의 면세점을 낮추면 징수비용보다 세수가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함
  - 다만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시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새로운 징수모델(collection models)을 발굴하도록 권고함
- 이후 온라인 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소액 수입물품 면세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sup>155)</sup>
  - 국립 호주은행은 2017년 6월 온라인 소매 매출은 약 227억호주달러로 이 중 5분의 1(전체 소매 매출의 1.5%)이 해외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152) 홍범교·유현영, 『국제거래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 125.

153) 홍범교·유현영, 2011, pp. 125~126.

154) Productivity Commission, 2017, p. 3.

155) Productivity Commission, 2017, p. 3.

- 호주는 2018년 7월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징수 방안으로 국외 판매자 등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판매자 모델을 채택함<sup>156)</sup>
  - 호주 생산성위원회는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모델의 한계를 감안할 때 판매자 모델이 가장 타당하다고 밝힘
  - 논의 과정에서 운송업체 모델(transporter-based collection models), 구매자 모델(Purchase models), 재무중개자 모델(financial intermediary models)이 제시되었으나 다음의 사유로 제외됨
    - 운송업체 모델: 더 많은 세수를 얻을 수 있으나 국제우편의 경우 여전히 종이 기반으로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며, 타 국가와 개별적 우편서비스 협약 등 난관이 예상되며 높은 관리 및 준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 구매자 및 재무중개자 모델: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2018년 입법까지 준비가 부족하여 적합하지 않음
  - 호주는 입법된 판매자 모델과 대안으로 제시된 모델에 대해 5년 후 재검토하기로 함

#### 나. 소액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호주는 2018년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수입하는 1천호주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sup>157)</sup>
  -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통관시점이 아닌 판매시점에 국외 판매자가 징수하도록 규정함<sup>158)</sup>
    - 즉 부가가치세 목적상 소액 수입물품은 수입이 아닌 국내 판매로 취급됨<sup>159)</sup>

156) 호주 생산성위원회, "Collection Models for GST on Low Value Imported Goods," <https://www.pc.gov.au/inquiries/completed/collection-models/report>, 검색일자: 2020. 7. 22.

157) 호주 국세청, "GST on low value imported goods,"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gst-on-low-value-imported-goods/>, 검색일자: 2020. 5. 25.

158) 호주 관세청, "BUYING ONLINE," <https://www.abf.gov.au/buying-online/buying-online>, 검색일자: 2020. 5. 27

159) Department of Home Affairs, *DEPARTMENT OF HOME AFFAIRS NOTICE No. 2018/13*, 2018, p. 1.

- 소액 수입물품이 아닌 1천호주달러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통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1) 과세요건<sup>160)</sup>

- 소액 수입물품의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음
  - 호주와 관련성이 있을 것<sup>161)</sup>
    - 2018년 7월 1일부터는 다음의 경우도 호주와 관련성이 있다고 봄
      -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소액 수입물품
      - 호주로 물품을 가져오는 데 관여하는 국외 판매자, 플랫폼 사업자 또는 배송대행업체
  -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을 것
  - 사업수행의 일부일 것(플랫폼 사업자 또는 배송대행업체는 사업의 일부로 취급됨)
  - 영세율(GST-free) 또는 면세(input taxed)가 아닐 것
- 다만 호주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매하는 소액 수입물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 소액 수입물품 가격산정

- 소액 수입물품이란 관세물품가격(customs value)이 1천호주달러 이하의 물품을 말함<sup>162)</sup>

160) 호주 국세청, "When to charge GST,"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gst-on-low-value-imported-goods/when-to-charge-gst/>, 검색일자: 2020. 5. 26.

161) 일반적으로 호주 안에서 배달되거나 사용가능한 경우 호주와 관련성이 있다고 봄(홍범교·안종석, 2001, p. 67.)

162) 호주 국세청, "Terms we use,"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gst-on-low-value-imported-goods/terms-we-use/>, 검색일자: 2020. 5. 25.

- 담배 및 주류는 가격에 관계없이 수입할 때 과세되기 때문에 소액 수입물품 정의에서 제외됨
- 관세물품가격은 일반적으로 발송국가에서 호주로 오는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관세물품가격에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하여 산정함
  - 호주달러 이외의 통화로 수입하는 경우 호주달러로 계산하여 1천호주달러 여부를 결정함
- 여러 개의 소액물품(예, 관세물품가격이 각각 600호주달러인 물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의 위탁품으로 배송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여러 개의 소액물품을 하나의 위탁품으로 묶고 관세물품가격이 1천호주달러를 넘으면 부가가치세는 판매시기가 아닌 통관 시에 부과됨
    - 하나의 위탁품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

〈표 III-4〉 호주의 소액물품 관세물품가격 계산 사례

사례	내용
호주에 사업자등록을 한 영국 자전거 회사로부터 소비자가 자전거를 900호주달러(GST제외, 운송비 50호주달러 포함)에 구입하는 경우	- 관세물품가격은 850호주달러(900호주달러-운송비 50호주달러)로 소액물품에 해당되어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영국 자전거 회사는 소비자가 웹사이트에서 결제 시 부가가치세 포함 990호주달러(900호주달러 + GST 90호주달러)를 청구함
상기 자전거 회사로부터 소비자가 자전거를 1,250호주달러(GST제외, 운송비 50호주달러 포함)에 구입하는 경우	- 관세물품가격은 1,200호주달러(1,250호주달러-운송비 50호주달러)로 소액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판매 시 과세되지 않고 통관 시 과세됨 - 만약 자전거 구입 시 75호주달러의 헬멧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 헬멧은 소액물품에 해당되어 자전거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되나 자전거와 헬멧이 하나의 위탁품으로 배송될 것이 확실하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자료: 호주 국세청, "Terms we use,"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gst-on-low-value-imported-goods/terms-we-use/>, 검색일자 2020. 5. 25.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3) 징수의무자<sup>163)</sup>

- 국외 판매자, 플랫폼 사업자, 배송대행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음
  - 다만 다음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및 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운송서비스
    - 결제시스템 또는 결제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서비스
    - 상품권(face-value vouchers) 등을 판매하는 전자통신서비스
    -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만 제공하는 등 광고만 하는 디지털 서비스
  
-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국외 판매자, 플랫폼 사업자, 배송대행업체이나 징수 주체는 하나이므로 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에 책임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책임이 없으며 플랫폼 사업자 또는 국외 판매자가 판매에 책임이 있는 경우 배송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 책임이 없음
    - 즉 ① 플랫폼 사업자 ② 국외 판매자 ③ 배송대행업체 순으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징수의무자는 수입서류에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정보를 포함시켜야 함
  -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정보가 호주 운송업자와 세관에 제공되어 수입신고서가 올바르게 작성되도록 수출국의 운송업자 및 세관 중개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163) 호주 국세청, "Who charges GST,"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gst-on-low-value-imported-goods/who-charges-gst/>, 검색일자: 2020. 5. 25.

#### 4) 사업자등록(Registration)<sup>164)</sup>

- 소액 수입물품 관련 호주와 관련된 매출액이 7만 5천호주달러(비영리단체는 15만호주 달러) 이상인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이 기준은 호주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됨
  - 플랫폼 사업자나 배송대행업체는 국외 판매자 대신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국외 판매자 매출은 플랫폼 사업자나 배송대행업체의 매출에 반영함
  
- 사업자등록을 위한 매출액 판단기준은 총 수입금액(gross business income)임
  - 다만 다음은 총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 소비자에게 판매 시 포함시킨 호주 부가가치세
    - 과세대상이 아닌 매출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출
    - 면세(input-taxed sales)
    - 영세율(GST-free sales)
    -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국외 판매자의 매출(플랫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책임이 있음)
    -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판매한 소액 수입물품
    - 호주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수입 용역 및 전자적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소액 수입물품이 아닌 경우(1천호주달러 이상)
  - 운송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기준 판단 시 포함하여 계산함
  - 매출액 판단기준 기간은 12개월로 이번 달과 이전 11개월의 매출액 또는 이번 달과 다음 11개월의 매출예상액으로 할 수 있음

164) 호주 국세청, "Registration,"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gst-on-low-value-imported-goods/registration/>, 검색일자: 2020. 5. 26.

-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요구되는 비거주사업자는 간이사업자등록(Simplified registration) 또는 일반사업자등록(Standard GST registration)을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간이사업자등록과 일반사업자등록은 동시에 등록할 수 없음
  
- 간이사업자등록은 온라인 등록절차를 통해 쉽고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임
  - 호주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보안 인증서(secure credential)인 AUSid 설치 후 부가가치세 시스템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부사항 등을 관리할 수 있음
  - 간이사업자등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신분 확인이 필요 없음
    - 사업자등록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대신 국세청 식별번호(Australian Taxation Office reference number, ARN)를 사용함<sup>165)</sup>
    -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음
    - 세금계산서(tax invoices) 및 수정세금계산서(adjustment notes)를 발행할 수 없음
    -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 SWIFT 은행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전자결제가 가능함
  
- 일반사업자등록은 일반 호주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임
  - 일반사업자등록은 온라인, 양식 제출, 전화, 등록대행 등을 통해 등록 가능함
  - 일반사업자등록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청하고 부여받아야 됨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과세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월별, 분기별, 연별로 구분됨<sup>166)</sup>

165) 국세청 식별번호는 사용자 식별을 위한 12자리 숫자(예, 123456789012)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s, BAS)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sup>167)</sup>

#### 5) 제재사항<sup>168)</sup>

- 소액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이자, 과태료,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음
    - 고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과소 신고함
    -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와 공모함
    - 납세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음
- 국세청장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자 직권등록
  - 가산세(administrative penalty)로 75% 추가 부과

166) 기업 규모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더 짧은 경우로 변경 가능)

- (월 별) 매출액이 2천만호주달러 이상
- (분기별) 매출액이 2천만호주달러 미만
- (연단위)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액이 7만 5천호주달러(비영리기관 15만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호주 국세청, "Lodging your BAS or annual GST return," <https://www.ato.gov.au/business/gst/lodging-your-bas-or-annual-gst-return/options-for-reporting-and-paying-gst/>, 검색일자: 2020. 5. 27.

167)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는 사업활동보고서 제출이 필요함(호주 국세청, "Business activity statements," [https://www.ato.gov.au/Business/Business-activity-statements-\(BAS\)/](https://www.ato.gov.au/Business/Business-activity-statements-(BAS)/), 검색일자: 2020. 5. 27.)

168) 호주 국세청, "Making compliance happen,"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GST-on-low-value-imported-goods/Making-compliance-happen/>, 검색일자: 2020. 5. 26.

- 호주 내 자금 몰수
- 사업자 본국 법원에 채무 등록
- 사업자 본국 세무당국에 채무회수 요청

〈표 III-5〉 호주의 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제재사항

구분	내용	국세청 제재사항
완전 의무 준수 (규정을 항상 준수하려고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li> <li>- 사업시스템에 필요한 내용 수행</li> <li>- 부가가치세를 징수</li> <li>- 기한 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li> <li>- 단순 오류(honest mistak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제재 없음</li> <li>〈18. 7. 1.~19. 6. 30.〉</li> <li>- 오류수정 요청</li> <li>- 벌금 부과 제외</li> <li>〈19. 7. 1.부터〉</li> <li>- 오류수정 요청</li> <li>- 벌금 부과</li> <li>(부과 전 납세자의 상황 및 협력 여부 고려)</li> </ul>
대부분 의무 준수 (항상 준수하지는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li> <li>- 부가가치세 징수, 신고, 납부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국세청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제재 없음</li> <li>〈18. 7. 1.~19. 6. 30.〉</li> <li>- 오류수정 요청</li> <li>- 벌금은 부과 제외</li> <li>〈19. 7. 1.부터〉</li> <li>- 오류수정 요청</li> <li>- 벌금 부과</li> <li>(부과 전 납세자의 상황 및 협력 여부 고려)</li> </ul>
부분적 의무 준수 (준수 의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li> <li>- 부가가치세 징수, 신고, 납부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 7. 1.부터〉</li> <li>- 납부세액 계산 및 고지서 발행</li> <li>- 행정적 벌금 75% 추가 부과</li> <li>- 채무회수 조치</li> </ul>
준수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 준수를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 7. 1.부터〉</li> <li>- 사업자 직권등록</li> <li>- 납부세액 계산 및 확정</li> <li>- 행정적 벌금 75% 추가 부과</li> <li>(주요 글로벌 기업의 경우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li> <li>- 채무회수 조치</li> </ul>

자료: 호주 국세청, "Making compliance happen,"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gst-on-low-value-imported-goods/Making-compliance-happen/>, 검색일자: 2020. 5. 26.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국세청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찾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함
  - 소비자로부터 국외 사업자로의 자금 흐름 추적
  - 수입정보가 포함된 세관자료 활용
  - 정보공유협정에 따라 타 국가로부터 획득한 정보 활용
  - 웹사이트에서 사업자 여부 확인 등 온라인 조사
  - 개인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의무 미준수 업체 정보 활용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활용
  -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잠재적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 활용
  - 익명 제보

6) 통합화물시스템 변경<sup>169)</sup>

- 호주는 국세청에 소액 수입물품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국경에서의 통관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통합화물시스템(Integrated Cargo System, ICS)상에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 통합화물시스템은 수입신고 시 전자적인 방식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함
  - 통합화물시스템상에서 추가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식별번호
    - 수입업자의 식별번호
    - 부가가치세가 이미 납부된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코드

---

169) 호주 관세청, “GST on low value goods,”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importing/cost-of-importing-goods/gst-and-other-taxes/gst-on-low-value-goods>, 검색일자: 2020.7. 22.

#### 4. 뉴질랜드<sup>170)</sup>

##### 가. 개요

- 뉴질랜드는 2019년 6월 14일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소정의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low value imported goods)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함<sup>171)</sup><sup>172)</sup>
  -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 국외 사업자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① 판매업자(merchants) ② 전자적 중개시장의 운영자(operators of electronic marketplaces, 이하 ‘플랫폼 사업자’라 함) ③ 배송대행업체(redeliverers)를 포함하는 개념임
  - 다만 12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가액이 6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거나 동 금액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부과됨
    - 이 기준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것임
- 법 개정 전에는 400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음
  - 1986년 최초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소비자에 의한 국외로부터의 물품 구입이 드물고 온라인 쇼핑이 없었으므로 400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소액물

170) Inland Revenue, *GST on low-value imported goods - a special report*, IRD Policy and Strategy, 2019. 8.을 참고함

171) Goods and Services Tax(GST) Act 1985

172) section 8(3) of the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85

품에 대한 세액 징수 효과는 징수 행정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러한 상황은 뉴질랜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원칙의 예외로서 용인됨

-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으로 소액물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세수 손실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 한 것임
  -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 인한 세수 손실은 2017~18 과세연도 기준 1억 3천만뉴질랜드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또한 동종의 소액물품 시장에 있어 국내 사업자는 국외 사업자보다 불리한 경쟁적 위치에 놓인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번 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뉴질랜드 소비자가 일정한 국외 사업자로부터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서적, 의류, 화장품, 신발, 스포츠 장비, 소형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음
  - 이로 인해 뉴질랜드 조세 체계상 넓은 세원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적 시장 여건 생성이 기대됨
  
- 한편 관세를 면제하는 최소 기준점(De minimis)은 1천뉴질랜드달러로 운영하기로 하며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수료(Import Entry Transaction Fee) 및 '생물안전 검사를 위한 반입징수 제도(Biosecurity System Entry Levy)'를 폐지함
  - 최소기준점을 기존 400뉴질랜드달러에서 1천뉴질랜드달러로 인상함으로써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재적 이중과세의 위험 부담을 덜고자 한 것임

## 나. 소액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1) 소액 수입물품의 정의

- 「부가가치세법」상 물품(goods)이란 ‘모든 종류의 실제의 또는 개인적 재산(all kinds of real or personal property)’을 의미함
  - 다만 무체동산, 화폐, 전선(wire)·케이블·전파(radio)·광학·전자기적 매체 등에 의해 전송되는 산출물은 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 2) 과세요건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액 수입물품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개별 수입물품 가치가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일 것
    - 수입물품(Consignment)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패키지(package) 또는 꾸러미(parcel) 형태의 물품을 말하는데,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동일한 구매자에게 같은 날 도착한 두 개 이상의 패키지 또는 꾸러미를 하나의 수입물품으로 취급할 수 있음
  - 공급 당시 해당 물품은 뉴질랜드 밖에 소재할 것
  - 비거주자에 의해 공급될 것
  - 뉴질랜드 영토 안으로 반입될 것

### 3) 소액 수입물품 기준점

- 해당 수입물품이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관세의 과세가액 추정치(Estimated customs value)’를 사용함<sup>173)</sup>

---

173) section 10B of the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85

- 관세의 과세가액 추정치는 총 지급대가(amount of consideration)에서 부가가치세, 공급자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관세나 기타 소비세, 국외에서 출발하여 뉴질랜드 내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총 지급대가란 계약에 의해 소비자가 해당 물품 수령을 위해 공급자에게 지불하기로 동의한 총 금액(sum of money)을 말함
  - 차감해야 할 운송비 및 보험료에는 수출국 국내에서 발생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수입물품이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외 사업자는 지정된 환율을 선택하여 뉴질랜드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으며, 선택한 환율 기준은 일관성 있게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함<sup>174)</sup>
- 국외 사업자는 다음의 열거된 환율을 선택할 수 있음
  - 세관에서 공표하는 환율
  - ‘뉴질랜드 지급준비은행(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 고시 환율 또는 여타 중앙은행이 공표하는 관련 고시 환율
  - 외환중개시장에서 공개된 환율
- 환율 유형, 즉 매입 환율, 매도 환율, 평균 환율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 선택 가능함

#### 4) 납세의무자

- 수입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외 판매자이나, 거래구조상 플랫폼 사업자나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들로 변경될 수 있음

---

174) 환율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GST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의 결정, 국외 사업자의 매출 규모 파악을 통한 사업자등록 의무 판단에도 동일함

- 판매자란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 통신판매(mail order), 중개시장을 통한 판매를 하는 자를 말함
  
- 플랫폼 사업자란 일반적으로 전자적(electronic) 방식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필요로 함<sup>175)</sup>
  -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단순히 결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제외됨
  - 웹사이트, 인터넷 포털, 게이트웨이(gateway), 상점(store), 플랫폼(distribution platform) 등의 형태를 띠면서 전자적 방식으로 운영됨
  - 판매자를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물품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물품 배송에 관한 의무를 부담함
  
- 배송대행업체란 판매자가 물품 배송에 관여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 의해 뉴질랜드 내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업체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와 배송대행업체 간 계약에 있어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물품의 배송에 있어 뉴질랜드 밖의 주소의 사용을 제공하는 경우
  - 물품의 배송에 있어 뉴질랜드 밖의 주소의 사용을 주선하거나 보조하는 경우
  - 물품 수령자의 대리인으로서 뉴질랜드 밖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뉴질랜드 밖에서 물품의 구매를 주선하거나 보조하는 경우
  
- 뉴질랜드 국세청장은 국외로부터의 수입물품 공급에 대하여 플랫폼 사업자나 배송대행업체 등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 국세청장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
    - 판매자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할 경우(배송대행업체 개입 여부와는 무관),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대상자라면 플랫폼 사업자를 부가가치

175) 경우에 따라서는 비전자적(non-electronic) 방식의 중개시장의 운영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뉴질랜드 국세청장의 별도 승인을 얻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GST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세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 물품의 최종 도착지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판매자나 플랫폼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배송대행업체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 만일 뉴질랜드 거주자 대리인(New Zealand-resident agent)이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물품을 공급할 경우 대리인과 비거주자 간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대리인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 이렇게 판매자 외의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이유는 판매자로부터의 활용 가능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보통 플랫폼 사업자나 배송대행업체는 수입물품에 관한 정보(물품가액 및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 금액 등)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

## 5) 사업자등록

- 이번 법 개정으로 뉴질랜드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국외 사업자 중, 12개월을 기준으로 공급가액 6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뉴질랜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게 되었음
- 사업자등록 의무 기준점(threshold)을 판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국 화폐가치를 뉴질랜드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음
- 국외 사업자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판매업자, 플랫폼 사업자, 배송대행업체를 포함하는 개념임
- 다만 사업자등록 의무 기준점을 하회하더라도 국외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뉴질랜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국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사업자등록 의무화는 소득세 부과를

위한 거주자 여부 판단 및 뉴질랜드 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존재 유무의 판단과는 별개임

-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된 서식 및 정보는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동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함
  -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연락처, 거주지국, 거주지국 내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s), 사업활동의 구체적 내용, 관련 웹사이트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함
  
- 만일 기존 뉴질랜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이미 과세공급을 하는 국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추가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무방함
  
- 비거주자 국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간이등록(Simplified pay only registration) 방식과 일반등록(Full registration) 방식으로 구분됨
  - 간이등록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절차만 필요하고 비용환급청구(claim expenses)가 필요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뉴질랜드 소비자에게 공급된 총 물품 가액의 매출규모와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만을 신고·납부하면 됨
  - 일반등록은 부가가치세의 납부뿐만 아니라 환급절차도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등록방법으로서, 해당 국외 사업자의 신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등록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상세 정보가 요구됨
  
- 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사업자는 뉴질랜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 과세기간(taxable period)은 1년에 4번 각 분기 단위이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8일 내임

## 6) 납부세액 및 과세절차

- 국외 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Value of supply)에 15%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됨<sup>176)</sup>
  - 공급가액이란 총 지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 국외 사업자로부터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물품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국외 사업자에게 지불하므로 세관에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절차를 거치지 않음
  - 즉 해당 국외 사업자가 뉴질랜드 사업자등록 대상인 경우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뉴질랜드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함
    -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금액의 뉴질랜드 화폐가치로의 환산은 각 물품의 공급시점, 각 과세기간의 종료시점, 부가가치세 신고일 또는 신고기한의 종료일, 뉴질랜드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특정일 등으로 선택할 수 있음
  -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수입물품의 경우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하고는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음
  
- 1천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의 경우,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외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할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관세청(New Zealand Customs Service)은 물품 가액 1천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수입 탁송품에 대하여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함께 징수하고 있음
    - 국외 사업자는 세관이 관련된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 서류에 공급자의 이름 및 등록번호, 각각의 수입물품에서 부가가치세가 이미 징수되었는지 여부 등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176) 다만 순정금속(fine metal)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있음

- 다만 국외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한 경우에 있어 1천뉴질랜드달러 초과 공급물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12개월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 사업자가 뉴질랜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총 가액 중 75% 이상이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 뉴질랜드 조세 시스템의 통합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청장이 허락하는 경우
  
- 국외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경우 국외 사업자는 영수증(receipt)을 뉴질랜드 소비자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는 이러한 영수증으로 세관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등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함
    - 공급자의 이름 및 등록번호
    - 공급일
    - 영수증 발급일
    - 수입물품의 상세 내역
    - 물품의 가액과 징수된 부가가치세 금액
    - 영세율이 적용된 품목이 있다면 관련 정보
  -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공급과 동시에 발급되어야 하며, 만일 공급과 동시에 발급되지 않아 이후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의 사업거래일 내에 발급되어야 함
  
- 한편 뉴질랜드의 사업자가 물품을 국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물품의 금액에 상관없이 해당 국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음<sup>177)</sup>
  - 국외 사업자는 물품 구매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GST Registration Number)나 사업자번호(New Zealand Business Number)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추정하는 것이 용인됨

---

177) section 8(4) of the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85

- 뉴질랜드 국세청장은 다음의 항목들을 고려할 경우 국외 사업자의 공급 물품이 뉴질랜드 내의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공급물품의 속성(예를 들면 오직 과세 사업활동을 위하여 공급되는 제품)
  - 공급물품의 가액(예를 들면 사업자가 사업의 과정에서 필요한 소액물품의 거액의 대량 구매)
  - 물품 공급과 관련된 거래 조건(예를 들면 사업자의 사용 허가를 요건으로 한 물품의 공급)
- 다만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공급의 경우, 해당 국외 사업자가 향후 12개월 동안 뉴질랜드에 공급하는 총 물품의 공급가액 중 비사업자(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금액의 비중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음
  - 이때는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행하여야 함
  - 물품 수령자의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소액물품 공급이라면 국외 사업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임
- 만약 뉴질랜드 내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국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함
  - 국외 사업자는 해당 착오가 명확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수정절차를 밟아야 함
  - 만약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 가액이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인 경우 국외 사업자는 별도의 수정절차 없이 구매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급할 수도 있음
- 다만 뉴질랜드 내 사업자에 의해 국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과세공급(making taxable supplies)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리납부(reverse charge)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함

- 대리납부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실제 또는 예정 사용 용도가 비과세공급의 95% 이상일 때 적용함

〈표 III-6〉 뉴질랜드의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절차 요약

구매자	세부 상황		과세절차
소비자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		- 사업자등록 대상 국외 사업자가 GST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함
	1천뉴질랜드달러 초과 물품을 수입		- 원칙: 수입신고를 통해 세관에서 GST를 징수함 - 예외: 해당 국외 사업자가 뉴질랜드로의 공급가액의 75% 이상을 소액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외 사업자가 GST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사업자	수입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물품	- 원칙: GST의 징수나 납부절차 필요 없음 - 예외: 해당 국외 사업자가 자신의 뉴질랜드로의 총 공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비사업자에게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GST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1천뉴질랜드달러 초과 물품	- GST의 징수나 납부절차 필요 없음
	수입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비과세사업에 95% 이상 사용) 경우		- 대리납부(reverse charge) 방식으로 GST 납부함

자료: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한편 국제우편(international post)을 통해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receipt)을 발급받는 것 외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현재의 시스템상 국제우편을 통한 물품의 도착에 대해서, 뉴질랜드 세무당국에 관련 정보의 전달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수년 안에 국제우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함
- 만일 1천뉴질랜드달러 이상의 물품을 국제우편으로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는 통관대행업자(customs broker)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의 반출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만약 소비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이 있다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이를 통관대행업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7) 제재사항

- 국외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구매자의 부가가치세 영수증 요청일로부터 10일의 사업 거래일 내에 해당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지식범죄(knowledge offences)에 해당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제재(penalty)가 부과될 수 있음
- 뉴질랜드 국세청장은 물품의 구매자(소비자) 또는 비거주자인 판매자에 대해서 다음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들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강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게 하는 권한을 갖음
  - 물품의 구매자나 비거주자인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거짓(false) 또는 오도하는(misleading)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미납을 초래하는 경우
    - 소비자는 판매자, 플랫폼 사업자, 배송대행업체에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비거주자인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의 미납금액이 중대하거나 그릇된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 또한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자임을 표명하는 행위, 판매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을 속이는 행위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지식범죄를 한 것으로 보아 형사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음

- 해당 소비자, 판매자에게는 미납부 GST의 납부뿐만 아니라 최초 위반 시 최대 2만 5천뉴질랜드달러, 반복 위반 시 최대 5만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 국제비교

#### 가. OECD 및 EU의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 OECD와 EU는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완·수정해 오고 있음
- OECD는 OECD 회원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반해, 유럽위원회는 EU의 통일된 부가가치세 지침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집행 및 운용은 각 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을 통해 운영하도록 함
  - EU 회원국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위임규정 이외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유럽위원회에 보고 및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함
- OECD와 EU는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소비자국 과세원칙, 간이 사업자등록,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큰 틀에서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OECD와 EU는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오고 있으며, EU는 2021년 7월 1일부터 역내외 모든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함
- 현재 EU는 역외거래의 경우 10~22유로 이하의 물품은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OECD와 EU는 소액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음
  - EU의 경우 역내 1만유로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급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으로는 OECD와 EU 모두 간이사업자등록을 제시함
  - EU 역내 거래의 경우 EU 내 한 국가에서만 간이사업자등록(OSS)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역외 거래의 경우 150유로 이하는 역내 거래로 보아 간이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함
  
- OECD와 EU는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EU는 원칙적으로 판매자를 징수의무자로 두되, 모든 역외 거래 및 역내 150유로 이하의 거래는 플랫폼 사업자를 징수의무자로 봄

〈표 IV-1〉 OECD 및 EU의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구분	OECD	EU
목적	- OECD 회원국에 가이드라인 제공	- 유럽의 통일된 부가가치세 지침 제정 • 위임규정 이외의 규정은 EC에 보고, 허가 등의 절차를 요함
소액 수입물품 과세 여부	- 과세	- 2021년 7월 1일 이후 역내, 역외 모두 과세 • 법 시행 전까지 역내는 과세, 역외는 10~22유로 면세
과세원칙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예외) 공급지국 과세: 역내 1만유로 이하 소규모 사업자
징수방법	- 간이사업자등록	- 간이사업자등록(OSS) • (역내) EU 내 한곳에서 OSS 등록 • (역외) 150유로 이하는 역내거래로 보아 OSS 등록
징수의무자	- 플랫폼 사업자 (부가가치세 목적상 플랫폼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완전책임모델 제시)	- 국외 판매자 - 다음의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 • (역내) 150유로 이하 • (역외) 금액제한 없음

자료: 본문의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나. 주요국의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조사대상 주요국은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점을 허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거나 과세할 예정임
  - 호주는 2018년 7월 1일, 뉴질랜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도입했으며 EU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행 전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였음
  - 소액 수입물품 면세점은 EU는 역외거래에 한해 10~22유로, 호주는 1천호주달러, 뉴질랜드는 400뉴질랜드달러임
  
- 주요국은 소액 수입물품의 기준금액을 설정해 두고, 기준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은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통관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 EU는 150유로를 소액 수입물품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1천호주달러, 1천뉴질랜드달러임
    - 뉴질랜드의 경우 1년간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 중 소액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이거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1천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판매 시 과세할 수 있음
  
-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판매자, 플랫폼 사업자 또는 배송 대행업체이며 국가별로 납세의무자 간 우선순위 등을 별도로 규정함
  - EU는 원칙적으로 판매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역외거래 등은 플랫폼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함
    - 플랫폼 사업자는 150유로 이하의 역외거래와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역외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를 부담함

- 호주는 플랫폼 사업자, 판매자, 배송대행업체 순으로 납세의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원칙적으로 판매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국세청장 재량으로 플랫폼 사업자 또는 배송대행업체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주요국은 소액 수입물품 납세의무자에 대해 간이 또는 일반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음
- EU는 역내거래 및 150유로 이하의 역외거래에 대해 EU 내 한 국가를 지정해 간이사업자등록(OSS)을 하여야 함
    - 다만 EU 역내거래의 1만유로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공급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 호주는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7만 5천호주달러(비영리단체 15만호주달러) 이상인 국외 판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뉴질랜드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6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국외 판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주요국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사항을 두고 있음
- EU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정보 제출의무 강화 및 조세회피방지 지침을 마련 중이며 일부 국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등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음
  - 호주는 사업자 직권등록, 가산세 75% 추가 부과, 호주 내 자금몰수, 판매자 본국 법원에 채무를 등록하고 세무당국에 채무회수 요청을 하는 등의 제재를 두고 있음
  - 뉴질랜드는 의무 미준수 시 지식범죄로 보아 민형사상 제재를 부과함
    - 최초 위반 시에는 최대 2만 5천뉴질랜드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5만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표 IV-2〉 주요국의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구분		EU	호주	뉴질랜드
시행시기		- 2021년 7월 1일	- 2018년 7월 1일	- 2019년 12월 1일
면세점	전	역내 - 과세 역외 - 10~22유로	- 1천호주달러 이하	- 400뉴질랜드달러 이하
	후	역내 - 과세 역외 - 과세	- 과세	- 과세
소액물품	기준금액	- 150유로	- 1천호주달러 이하	-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
	기준금액 초과	- 통관 시 과세	- 통관 시 과세	- 통관 시 과세 (다만 1년간 소액 수입물품 비중이 75% 이상이거나 국제청장 인정 시 판매 시 과세)
납세의무자		- 판매자(원칙) - 플랫폼 사업자 • (역내) 150유로 이하 • (역외) 금액 제한 없음	- (1순위) 플랫폼 사업자 - (2순위) 판매자 - (3순위) 배송대행업체	- 판매자(원칙) - 플랫폼 사업자 또는 배송대행업체 <sup>1)</sup>
사업자등록	방법	- OSS 또는 회원국별 일반사업자등록	- 간이 또는 일반사업자등록	- 간이 또는 일반사업자등록
	기준 (EU는 OSS 등록 기준) (EU는 OSS 등록 기준)	- (역내) EU 내 한 국가에서 OSS 등록 <sup>2)</sup> • 1만유로 이하 소규모사업자는 공급지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가능 - (역외) 150유로 이하는 역내거래로 보아 OSS 등록	- 7만 5천호주달러 이상 <sup>3)</sup> (비영리단체 15만호주달러)	- 6만뉴질랜드달러 초과 <sup>3)</sup>
제재사항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 강화 및 조세회피방지 지침 마련 중 - 일부 국가는 플랫폼 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등 자체 시행 중	- 사업자 직권등록 - 가산세 75% 추가 부과 - 호주 내 자금 몰수 - 판매자 국가 법원에 채무등록 - 판매자 국가 세무당국에 채무회수 요청	- 지식범죄로 민형사상 제재 부과 • 벌금 (최초) 최대 2만 5천뉴질랜드달러 (반복 시) 최대 5만뉴질랜드달러 - 요건 충족 시 사업자 직권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 강제

주: 1) 뉴질랜드는 원칙적으로 판매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국제청장 재량으로 플랫폼 사업자 또는 배송대행업체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

2) 2021년 7월 1일 전까지는 소비지국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함(역내 공급액이 3만 5천유로 또는 10만유로 이하는 국내거래로 취급하여 공급지국에서 납부할 수 있음)

3) 호주 및 뉴질랜드의 사업자등록 기준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함

자료: 본문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

## 2. 시사점

### 가.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필요성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세계관세기구(WCO) 개정 교토협약 (Revised Kyoto Convention)에 따라 관세 등의 간접세 부과에 하한선을 정하도록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의 면세점(de minimis threshold)을 운영하고 있음<sup>178)</sup>
  - 다만 개정 교토협약의 면세점 운영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면세점을 제시하지 않아 국가별로 상이함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1977년부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해 오고 있으며, 이는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의 과다와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에 과세되는 것으로, 재화가 수입되는 경우에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와 동일한 세 부담이 되도록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하여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그 효익(세수)에 비해 비용(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세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임
  
-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의 수입 규모가 당초 입법 당시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는 최

178) 정재호·김한성, 2019, p. 89

소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원칙적인 과세처리를 하였다면 징수할 수 있는 세수 규모는 2천억원을 넘어서므로<sup>179)</sup> 한계비용-한계효익 분석을 재검토할 수준에 이릅니다

- 물품의 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국내 동종 또는 유사 재화 판매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이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점차적으로 증대됨
  - 고의적으로 과세기준 면세점을 미달하여 수입신고하는 탈세 행위, 자가소비용 수입물품의 재판매에 따른 탈세행위 등이 일어남에 따라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세관의 행정비용도 증가함
- 세계적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 규모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OECD와 EU에서는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논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2018년 및 2019년부터 관련 과세제도가 시행됨
- OECD에서는 2015년 「디지털 경제의 세금 문제해결 최종보고서(*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2015 Final Report*)」를 통해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징수모형을 제시하고, 나아가 플랫폼 사업자를 징수의무자로 간주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EU에서는 2017년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패키지(VAT e-commerce package)를 통해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면 과세를 제안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 EU 회원국들의 시행을 예정함
  - 호주는 2018년 7월부터, 뉴질랜드는 2019년 12월부터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시행함
    - 호주는 2011년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에서 소액 수입물품의 면세점 하향 조정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검토 결과 소액 수입물품의 면세점을 낮추면 징수비용보다 세수가 클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179) 다만 현행의 한-미 FTA에 따른 미국발 수입물품의 면세한도(200달러) 및 「관세법」상 과세최저한 규정이 없는 것을 가정할 경우의 추정치임

- 뉴질랜드는 소액 수입물품에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2017~18 과세연도 기준 1억 3천만뉴질랜드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관련 징수 행정비용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따라서 온라인 기반의 경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 및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 국제적 제도 변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면세점을 하향 내지 폐지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세기준 면세점을 폐지하였거나 폐지를 예정한 호주·뉴질랜드·EU 회원국을 제외하고도 주요 OECD 국가인 캐나다(20캐나다달러), 일본(1만엔), 영국(15파운드) 등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기준 150달러는 절대적 수치로 다소 높은 편임
  -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면세점은 관세의 과세기준 면세점과는 별개로 설정이 가능함
    -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입법 목적이 상이하며, 실제 호주·뉴질랜드·EU 회원국들에서도 관세의 과세기준 면세점 제도는 유지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면세점만을 폐지함
  -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면세점은 그대로 두더라도 개인별 연간 누적거래한도 규정을 신설하여 총액 기준으로 동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하에서는 과세기준 면세점 인하를 통한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확대를 전제할 경우 징수 방안 및 기타 고려할 사항에 대해 논의함

#### 나. 소액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징수 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러한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보다 확대하고자 할 경우 현행 '납세의무자'나 '징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법적 또는 행정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해당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가 보다 실효성 있게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액물품 거래에는 구매자, 판매자, 플랫폼 사업자,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편사업자), 금융기관, 세무당국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개입되어 있음

□ 다음에서는 이에 대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1) 현행 제도 유지 및 행정적 보완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B2C 방식의 소액물품의 수입에 있어서 물품의 이동은 크게 특송업체(특급택송업체)를 이용하거나 우편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 특송업체는 수입국 세관이 해당 물품 도착 전에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통관의 신고인으로서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을 가진
  - 우편사업자는 종이문서의 형식으로 부착된 발송인, 수취인, 간략한 품명, 무게 등 제한적 정보만을 취득하며, 수입국 세관에 사전 통보 의무가 없으며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특송물품의 경우 현재 구매자가 150달러 초과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①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매금액과 함께 결제하는 방식 ② 배송대행을 통해 지불하는 방식 ③ 세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에서는 구매시점에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관세 등 관련 비용을 구매 금액과 함께 결제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배송대행을 지정하여 물품을 판매국 내의 배송대행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하고 구매자는

부가가치세 등의 제비용을 배송대행업체(또는 특송업체)에 지급할 수 있음

-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배송대행업체(또는 특송업체)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대납하지 않았을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게 되며 구매자가 직접 세관에 납부하게 됨
  
- 따라서 특송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면세점을 낮추더라도 추가적 행정비용 부담 없이 세수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대형 플랫폼 사업자나 배송대행업체, 특송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관에 대납하는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것임
  - 설령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한 대납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송업체는 물품의 가격, 품명, 수량 등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통관절차 수행 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음
    - 2019년 6월부터 관세청은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구매자의 신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우편서비스를 통해 수입되는 소액물품은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부가가치세 징수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전자상거래 우편물품은 매년 약 3천건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2018년에 약 400만달러 정도로 추정되나,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는 구입경로 등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아 관련 건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실재는 통계치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sup>180)</sup>
    - 우편물에 대한 정보 제공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과소보고의 가능성이 크며 우편서비스 사업자는 관련 과세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180) 정재호·김한성, 2019, p. 54.

-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를 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보는 이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으며 완벽한 납부를 담보할 수는 없음
  - 구매자의 자발적 협력은 해당 소액물품의 과세 정보를 자진 신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는 방안임
    - 구매자는 통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큼
    - 납부의무를 준수하는 구매자와 비준수하는 구매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함
  
- 따라서 소액 우편물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구매자의 자발적 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당국의 행정적 보완이 필요함
  - 구매자가 수입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관련 과세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통관 과정 또는 통관 이후에 사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운영 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기반이 될 수 있음
  - 구매자의 납부 의무 이행 촉진을 위해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구매자의 과소정보 신고나 미달 납부에 따른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음

## 2) 플랫폼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방안

- 개인 소액물품 무역 거래의 많은 비중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 보다 확실한 담보를 위해 이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OECD의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가 간 물품공급의 약 3분의 2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57% 정도가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sup>181)</sup>

181) OECD, 2019, p. 3.

- 플랫폼 사업자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는 과정에서 물품정보, 가격, 수량, 대금지급 방식, 계좌정보 등을 인지하고 있음
  -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수입국의 조세제도 및 통관제도를 숙지하고 있으며 충분한 현지 언어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최근 EU 회원국 및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거나 이미 운영 중임
- EU에서는 2021년 7월부터 특정 조건이 성립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자를 갈음하여 부가가치세 목적상 공급자로 간주하며,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 호주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연 매출액 7만 5천달러 이상의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행하게 함
  - 뉴질랜드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연 매출액 6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행하게 함
-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납세의무 부여를 강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입법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간이한 방법으로 국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EU 내 중개인(INTERMEDIARY) 지정을 통한 OSS 등록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및 신고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 등록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차적 납세의무자 지정 또는 구매자와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함
    -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 및 구매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물품 수입 시 통관에서 간소한 방법으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타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함

- 한편 2020년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구매대행업체에 화주와 관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게 되었으므로, 동 규정을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도 준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음<sup>182)</sup>

## 다. 기타 고려할 사항

### 1) 타 법률과의 관계 고려

#### 가) 관세법

- 소액 수입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점을 낮추는 경우 「관세법」 규정을 고려해야 함
  - 「관세법」은 150달러(특송통관 중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되고 있음
- 현행 소액 수입물품의 면세제도는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관세법」은 별도로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과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함
  -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소액물품 면세기준을 별개로 설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관세청의 업무 가중 등이 우려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 특히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특송물품과 달리 종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편

182) 「관세법」 제19조 제5항 및 부칙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

물의 경우 전수 수작업 조사로 인한 과도한 업무 가중이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한편 「관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소액물품 면세점 기준을 낮춘다면 소액부징수 규정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관세법」상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를 제외하는 소액부징수 제도를 두고 있음<sup>183)</sup>
  - 「관세법」상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가액은 대략 10만원 수준으로, 소액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낮추더라도 현재 1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로 세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수입관세율은 품목별로 다양하게 부과되므로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세율 10%로 단순 추정함
    - 참고로 가방, 노트북 등은 8%의 관세가 적용되며 신발, 의류 등은 13%의 관세가 적용됨

#### 나) 관세법 외

- 「부가가치세법」상 소액 수입물품의 면세점을 낮추는 경우 「관세법」 이외의 기타 법률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함
  - FTA의 경우 FTA 협정문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현행 법률과의 상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 한-미 FTA의 경우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함<sup>184)</sup>

183) 「관세법」 제40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37조

184) 한-미 FTA 7.7조 특송화물

사.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 미국을 제외하고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국가별 수입 비중을 고려했을 때 세수효과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2019년 금액기준 약 49%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액물품에 대해서만 면세가 유지되어 소액물품의 미국 수입 쏠림현상이 발생하거나 국가 간 상품의 과세불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수입물품 통관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마련 필요

- 소액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를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할 경우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통관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함
  - 전통적으로 수입물품은 국경에서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나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물품의 수입 시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국경에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징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호주의 경우 통합화물시스템에 부가가치세 면제코드를 부여하여 부가가치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 국제우편물의 경우 현재 종이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자적 프로세스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송물품은 전자적 처리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나 우편물은 수입물품의 품명, 금액 등을 수작업으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므로 소액물품에 대한 과세 확대 시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우편물 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은 2019년 금액 기준 2%에 불과하나 과세 확대 시 모든 통관물품을 수작업으로 검사함으로써 세수에 비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예상됨
  - 다만 일부 국가는 전자통관데이터(Electronic Advance Data, EAD)를 도입하

는 등 국제적으로 전자우편서비스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sup>185)186)</sup>

- 전자통관데이터는 국제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해 수기로 기재했던 발신·수취인 관련 정보, 품목, 수량, 가격 등 물품정보를 전자적으로 입력함으로써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sup>187)</sup>

### 3) 국제적 협력 강화

-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 및 탈세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당국 간 정보교환 등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플랫폼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목적상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등 소액 수입물품 과세 프로세스를 마련함에 있어 판매자, 플랫폼 사업자, 세관, 세무당국 등 관련 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 체계가 필요함
- 또한 국제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방식의 정보교환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

185) 캐나다는 현재 전자우편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일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186) 만국우편연합(UPA)과 세계관세기구(WCO)는 우편서비스를 통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국제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해 사전에 국가 간 전자상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전자통관데이터를 제안함(정재호·김한성, 2019, p. 110.)

187)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전자통관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① PC 또는 모바일로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함
- ② 화면에서 이름, 주소 등 발신·수취인 정보와 물품정보를 입력함(입력된 정보는 자동적으로 도착지 우체국에 전송됨)
- ③ 입력한 내용을 출력하여 배송물품에 붙여 우편 접수함  
(일본 우체국, 通関電子データ送信義務化について, <https://www.post.japanpost.jp/int/ead/index.html>, 검색일자: 2020. 8. 7. 및 캐나다 우체국, "Customs form," <https://www.canadapost.ca/cpotools/apps/cdc?execution=e1s1>, 검색일자: 2020. 8. 7.)

## 참고문헌

- 강효원,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정보 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6.
- 관세청,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2019.
- 관세청,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로 바뀐다」, 보도자료, 2019. 5. 28.
- 관세청 특수통관과,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0.
- 국세상담센터, 『2018 부가가치세 상담실무』, 2018.
- 권오현, 「디지털 상품의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관할권 문제」, 『조세연구』, 제9-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 김명호, 『특송물품의 최첨단 수출입 통관체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관세청, 2013.
- 양지선, 『해외직구 소비자 이용 및 피해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2019.
- 정다운·이재선·김미정,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정재호·김한성,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 정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정지선·구자은,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동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4.
- 주영준, 「해외직구 관련 규제정책의 국가 간 비교연구 - 미국, 유럽연합,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 홍범교,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정비』, 한국조세연구원, 2003.
- 홍범교·안중석, 『전자상거래와 조세 :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1.
- 홍범교·유현영, 『국제거래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Craig A. Hart, "The European Community's Value-Added Tax System: Analysis of the New Transitional Regime and Prospects for Further Harmonization," *Berkel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Issue 1., 1994.

Department of Home Affairs, *DEPARTMENT OF HOME AFFAIRS NOTICE No. 2018/13*, 2018.

Ecommerce Europe, *EU VAT Reform: pros and cons for online merchants*, 2017. 6.

European Commission,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the VAT exemption for importation of small consignments*, 2015. 5.

Grant Thornton, "Briefing Paper: More EU VAT changes on the way....," 2017.

Inland Revenue, *GST on low-value imported goods – a special report, IRD Policy and Strategy*, 2019. 8.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_\_\_\_\_, "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Turku (Finland)," *CONFERENCE REPORT*, 1997. 11. 19~21.

\_\_\_\_\_, "Electronic Commerce-Simplified Registration Guidance," *Consumption Tax Guidance Series: Paper No. 2*, 2003.

\_\_\_\_\_,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1998.

\_\_\_\_\_,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Collection of VAT/GST, WHERE THE SUPPLIER IS NO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AXATION*, 2017.

\_\_\_\_\_, *The Role of digital platforms in the collection of VAT/GST on online*

*sales, As presented for consideration at the fifth meeting of the Global Forum on VAT March 2019*, 2019.

Productivity Commission, *Collection Models for GST on Low Value Imported Goods, Productivity Commission Inquiry Report Overview&Recommendation, No. 86*, 2017.

Walter, Hellerstein and Timothy Gills, *The VAT in the European Union*, Tax Analysts, 2010. 4.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

관세청 블로그, <https://ecustoms.tistory.com/>

국제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몰테일, <https://post.malltail.com/>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main.do/](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main.do/)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http://overseas.mofa.go.kr/>

텍스넷, <http://www.taxnet.co.kr/>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https://www.bandtrass.or.kr/>

한미 FTA, <https://www.fta.go.kr/us/>

DHL, <https://www.dhl.c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nciashield.org/>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

아마존, <https://www.amazon.com/>

일본 우체국, <https://www.post.japanpost.jp/>

캐나다 우체국, <https://www.canadapost.ca/>

호주 관세청, <https://www.abf.gov.au/>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호주 생산성위원회, <https://www.pc.gov.au/>

Avalara, [www.avalara.com](http://www.avalara.com)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

kluwertax, [www.kluwertaxblog.com](http://www.kluwertaxblog.com)

OECD Ilibrary, <https://www.oecd-ilibrary.org/>

Tax-New.com, [www.tax-news.com](http://www.tax-news.com)

세법연구 20-02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해외사례 연구**

---

발 행 2020년 10월 31일

저 자 정다운·이형민·이성현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거목정보산업(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ISBN 979-11-6655-002-7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